

#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2014. 8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 머 리 말

올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표된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은 국민의 개인정보!”라는 우스갯소리가 등장하였다. 인터넷 포털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널리 퍼져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자조 섞인 농담이다.

사실, 2000년대 들어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은 아직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를 계기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체계 및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사례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도 사회적 자산의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보험범죄의 예방,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등을 통해 사회적 부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개인정보 관계법령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보험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보고서가 향후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에 관한 정책상 논의과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8월  
보 험 연 구 원  
원 장 강 호



# ■ 목차

---

요약 / 1

I. 서론 /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8

II.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 20

1. 개인정보의 개념 / 20
2. 개인정보의 분류 / 29
3. 보험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 32

III.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 36

1.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 36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검토 / 48
3.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운영상 문제점 / 97

IV. 제 외국의 입법례 및 활용실태 / 119

1.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률 체계 / 119
2. 보험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 124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현황 / 135

V.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 / 148

1.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해소 / 148
2. 보험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 강화 / 163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성 제고 / 175

| 참고문헌 | / 183

## ■ 표 차례

---

- 〈표 II-1〉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상 개인정보의 정의 / 24
- 〈표 II-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 31
- 〈표 II-3〉 보험개인정보의 내용상(수집목적상) 분류 및 수집항목 / 35
- 〈표 III-1〉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예외 사유 / 39
- 〈표 III-2〉 신용정보법상 동의예외 사유 / 43
- 〈표 III-3〉 정보통신망법상 고지사항 / 44
- 〈표 III-4〉 정보통신망법상 동의예외 사유 / 45
- 〈표 III-5〉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간 적용 순위 / 52
- 〈표 III-6〉 개인정보법률상 “수집” 관련 규정 / 58
- 〈표 III-7〉 개인정보법률상 “이용” 관련 규정 / 63
- 〈표 III-8〉 개인정보법률상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 70
- 〈표 III-9〉 개인정보법률상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관련 규정 / 78
- 〈표 III-10〉 개인정보법률상 “민감정보” 관련 규정 / 85
- 〈표 III-11〉 개인정보법률상 “위탁” 관련 규정 / 91
- 〈표 III-12〉 개인정보법률상 “파기” 관련 규정 / 96
- 〈표 III-13〉 개인정보법률상 개인정보 수집 시 통지사항 / 103
- 〈표 III-14〉 최근 3개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 116
- 〈표 IV-1〉 미국의 개인정보법률 체계 / 120
- 〈표 IV-2〉 미국과 영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시 동의 절차 비교 / 133
- 〈표 V-1〉 일반법과 특별법 간 보충적용원칙 적용 사례 / 153
- 〈표 V-2〉 보충적용원칙의 적용기준 예시 / 154
- 〈표 V-3〉 사전동의 수집제도의 합리화 방안 / 174
- 〈표 V-4〉 보험개인정보 제공목적별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 / 180

## ■ 그림 차례

---

- 〈그림 Ⅲ-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체계 / 37
- 〈그림 Ⅲ-2〉 법률 적용의 불명확성: 모자이크법 / 104
- 〈그림 Ⅲ-3〉 보험분야 표준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 / 113
- 〈그림 V-1〉 보험개발원의 ‘Do Not Call’ 서비스 / 170
- 〈그림 V-2〉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교환의무 / 176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formation Privacy Laws in Insurance**

This paper studies the protection and using plans of the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information privacy laws. The term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means the insurance information by which the individual in question can be identified. We examine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that insurance companies are collecting and managing.

Especially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laws applied to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Here we point out problems due to ambiguity and redundancy of law application and conclude that the cause of problems is from either many applicable laws or ignorance of insurance features. Also we examine the legal framework of information privacy law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Japan and explore the practical use of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in each country.

Finally, we suggest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to solve the problems;

- to make a guideline for consistent interpretation and management of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to reestablish a legal framework of information privacy laws, and to integrate laws applied to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 to improve insurance information privacy protective function effectively; strengthening guarantee of Personal Information Control Right, enhancing responsibility of insurance compani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rationalizing consent

obtaining system.

- to make a legal reason on the pooling of each companies insurance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insurance underwriting and the protection of insurance fraud.

## 요약

### I. 서론

-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정보의 활용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측면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음.
  - 특히, 2014년 1월 8일 검찰의 발표 이후 한동안 우리나라를 들쭉이게 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개인정보도 사회적 자산의 하나로서 활용가치가 존재하는 바, 이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법제의 다기화 및 중첩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험정보주체의 보호 강화방안 및 보험산업의 특성 반영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함.

### II.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 개인정보란 ‘개인’과 ‘정보’라는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로서 ‘날날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자료(데이터, 기록)’라고 폭 넓게 해석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로 정의됨.

- “보험개인정보”란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보험정보 중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보험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여기서 보험정보는 ‘보험거래 및 그 부수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임.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인정보는 보험거래 관련 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마케팅 관련 정보, 보안관리 관련 정보, 직원 인사관리 관련 정보 등으로 대별됨.

### Ⅲ.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 1.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 2011년 이전까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 및 분야별 필요성에 따라 개별 개인정보법률이 제정되어 왔음.
  - 2011년 개인정보법률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한편, 보험개인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주된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보험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이 있음.

〈요약 표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 체계

	규제대상(분야)	규제법률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부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사적부문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통신사업자	통신비밀보호법
	의료기관	의료법
	⋮	⋮

##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 · 검토

- (관계법령 간의 적용순위) 개인정보보호법과 특별법인 개별법들 간에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고,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
  - 특별법에 해당하는 개별법들 간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는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대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음.
  - 보험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그 적용순서가 결정될 것임.

〈요약 표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간 적용 순위

구분	법률 간 적용 순위
오프라인보험	보험업법등 개별법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보험	보험업법등 개별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수집)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 우선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되므로 동의를 수령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가능함.
  - 현재 보험회사는 후자에 따라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모두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수령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험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 그러나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하는 자가 수집동의를 수령해야 함.

- (이용)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할 것이고, 동 목적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거나 각 법에 열거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제3자 제공) 보험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목적 내·외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으면 보험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목적 외 제공이라 하여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신용정보법상의 동의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신용정보법은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할 경우 ‘보험개인정보의 수집’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임.
  -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으면 족하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수집목적 외 제공의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해석됨.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신용정보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정보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보험개인정보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제한됨.
  
- (민감정보의 처리)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 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질병정보 외의 민감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위탁) 보험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보험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절차(위탁내용의 주기적 통보, 수탁자의 관리·감독 등)는 준수하여야 할 것임.
  
- (파기)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파기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어 불이익 정보(5년 이내 삭제)나 폐업(지체없이 폐기) 이외의 경우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 열거된 파기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재된 파기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3.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운영상 문제점

#### 가. 적용 법률의 불명확 및 중첩 적용

- 현행 개인정보법제하에서는 보험사가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거래경로나 수집정보 유형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일반법과 개별법 간의 규율범위에 있어 혼란을 초래함.
  - 보충성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간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률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불명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체계상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는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짜깁기되어 모자이크법의 형태로 적용된다는 것임.

- 또한 규제의 취지가 상이한 다수의 법률들이 보험개인정보에 중첩적으로 적용된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선임 등 여러 부문에서 중복되는 규제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남.

#### 나. 정보주체의 보호 미약

- (개인정보의 부당한 수집)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살펴보면, 정상적인 보험거래 과정 이외에 마케팅, 업무제휴 또는 대리점 등록과정에서 다소 불건전한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임.
- (사전동의제도의 남용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는 사전동의제도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방법으로 제시함.
  - 그러나 실무상 포괄적 동의 등에 의해 얻어진 사전동의를 ‘정보활용의 면죄부’처럼 활용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음.
-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미흡)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상으로는 자기정보통제권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나, 수집동의권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수집동의 절차의 복잡성) 최근의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동의 항목의 과다 및 동의 절차의 복잡화 등에 따른 설명미흡과 생략으로 오히려 고객의 권익보호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 보험산업의 특성 미반영

- (엄격한 동의주의 적용 곤란) 보험거래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다수 존재하므로 현실적으로 동의 수령이 용이하지 않음.
  - 따라서 사전동의를 엄격히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 간 정보공유가 불가피한 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극히 제한되어 보험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함.
- (언더라이팅에의 활용 제한) 보험회사는 적절한 언더라이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소득정보, 건강정보, 신용정보 등이 필요함.
  - 특히,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거절자 명단, 보험인수유이자 명단의 공유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현재 수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IV. 제 외국의 입법례 및 활용실태

### 1. 각국의 보험개인정보 관련 법률

- 미국에 있어 보험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은 GLB 법, FCRA, HIPPA, NAIC 모델법, NCOLI 모델법 등임.
  - GLB법은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제시함.
  - NAIC표준모델법은 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 개인정보를 개인금융정보와 개인건강정보로 구분하여, 개인금융정보는 opt-out제도로 운영하고 개인건강정보는 opt-in제도로 운영함.

- NCOIL모델법은 NAIC에 비하여 보험회사의 부담을 경감하고 GLB법 제5장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조항의 주별 채택을 목적으로 공표됨.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은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opt-in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보험정보도 동 법률의 적용대상임.
  - 이외에 금융 및 보험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별법률로는 소비자신용법, 의료기록 접근법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opt-in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프랑스는 정보처리법이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적용됨.
  - 보험업의 경우 정보처리법 제17조에 근거한 「간략화 규범」의 제16호에서 개인데이터의 자동처리에 관하여 언급됨.
- 일본의 보험개인정보는 금융분야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관리됨.

## 2. 보험개인정보의 활용현황

### 가. 미국

- 의료정보국(MIB)은 1902년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피보험자의 의료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정보교환 시스템임.
  - 계약자의 도덕적 위험방지, 보험사기 방지 및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위한 보험기록과 병력기록을 조회해볼 수 있음.
- ISO(Insurance Service Office)는 보험회사 등에 데이터 제공·분석 및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업인 동시에 권고요율단체임.

- ISO의 클레임 서치는 보험사기 인지·방지 및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는 보험회사는 물론 경찰에서도 조회가 가능함.
- ISO는 자동차 및 재산손해와 관련하여 A-PLUS라는 최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언더라이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나. 영국

- 보험사기방지국(IFB)은 1995년 영국보험자협회(ABI)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범죄 및 사기방지 조치에 대한 조정기구임.
  - IFB는 보험사기 전과자 등의 인물정보(black list)를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자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보험데이터서비스(IDSL)는 최근 5개년 클레임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금 청구·인수정보 교환시스템(CUE)과 모든 자동차 클레임을 등록하여 기존 자료들과 비교함으로써 사기성 청구를 가려내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기대책 및 도난등록시스템(MIFTR)을 운영·관리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자기구(MIB)는 무보험차 방지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가입정보를 제공하는 활동과 함께 자동차보험 데이터베이스(MID)를 운영하고 있음.
  - 경찰은 물론 운전자, 차량면허국 등도 MI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

#### 다. 프랑스

- 보험사기방지국(ALFA)은 보험회사에의 보험사기 관련 정보제공, 수사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
  - ALFA에서는 보험사기의 의문이 있고 사기를 의도하였거나 사기로 보고된 사실이 있는 보험금 청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보험도난품수색·식별 경제이익단체(ARGOS)는 도난차·도난품의 수색, 회수 및 동일성 확인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보험회사 및 경찰에게 도난차량·도난품의 데이터베이스, 도난차량수색 및 방법정보를 제공함.

## 라. 일본

- 일본에서 보험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는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가 있음.
  -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관련하여 손해액 산정, 요율산출, 보장사업 조사 등을 위한 정보를 집중하고 있음.
  -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계약내용, 사고 상황, 보험금 청구내용 관련 정보 등을 집중하고 있음.
  -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공동센터(Life Insurance Network Center)를 통해 생명보험정보의 등록 및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V.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

### 1.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해소

#### 가. 보험개인정보의 해석 원칙 및 처리 기준 마련

- 정책당국은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적용법규의 혼란으로 인해 불법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수 법률 간의 상호중복·충돌·누락요소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석 및 적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보험분야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법적 근거를 두어 강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준수에 따른 책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특별법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선순위 법률 규정의 취지가 후순위 법률상의 요건이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특별법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나. 개인정보법률 간 체계 재정비

- 우리나라 개인정보법률 간의 정합성 부족문제의 해결방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간의 중첩규정들을 일반법-특별법의 법률관계의 법리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더불어 인터넷이 기본 인프라로 정착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특수하게 규율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 다.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일원화

-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법률의 통합작업이 성사될 경우, 동 통합법률 내에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다만,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개인정보에 관해 우선하여 적용되는 보험분야의 기본법을 만들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①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이나, ② 보험산업의 근거법률인 보험업법을 보험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재정립하는 방법이 있음.

## 2. 보험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 강화

### 가.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강화

- 자기정보통제권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보주체가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제도의 도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조회망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보험소비자가 자기정보의 이용·제공현황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확인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한편, 최근 정부는 카드 유출사태 이후 각 업권별로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나. 보험회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 업무제휴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보험회사의 책임강화
  - 보험회사가 업무제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회사에 관리·감독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종사자의 보험마케팅 시 개인정보 이용 제한
  - 대량의 고객을 보유한 회사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경우 타 사업을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보험모집인의 비밀준수의무 및 개인정보 누설금지의무 신설

-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준수 의무나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의무를 보험업법상에 신설하여 보험고객정보 보호 의식을 제고함.

#### 다. 사전동의 수집제도의 합리화

-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제1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되어 동의를 수령해야 한다는 의견(제2안)이 모두 가능한 바,
  - 본고에서는 제2안에서처럼 수집 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제1안처럼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제3안)을 제시함.

###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성 제고

#### 가. 공동이용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 마련

-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는 “동의예외조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동의예외조항은 인적예외조항과 목적별 예외조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먼저,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인적예외조항이 필요한 바, 보험계약은 사전에 계약상의 이해관계자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수령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보험정보의 활용목적별로 동의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존재하는 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통계 작성, 중복보험(계약 및 사고) 확인, 보험범죄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경우 등이 그것임.

- 지금까지 논의한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수집과 정보주체로의 통지사항을 정보제공 목적별로 요약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요약 표 3〉 보험개인정보 제공목적별 개인정보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

제공목적	공동이용		제3자 제공		연간이용내역통보
	동의	통지	동의	통지	
보험범죄 방지	×	×	×	×	×
할인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	×	×	×	×	○
중복보험 확인	×	×	×	○	○
보험인수 심사	×	○	○	○	○
보험마케팅에의 활용	○	○	○	○	○

#### 나. 언더라이팅에의 활용 근거 마련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거절자 명단, 보험인수유 의자 명단의 공유를 통해서 적정한 언더라이팅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동 정보들은 보험계약의 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미국 ISO, 영국 범죄·사기방지국, 프랑스 보험사기방지국에서는 보험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범죄자(적발자) 명단을 공유하고 있음.

---

# I. 서론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개인이 타인의 정보를 습득·이용하는 것은 공동체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그 개인의 권리이기도 함.
  - 각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간에 의존하며 살아감.
  - 이 과정에서 각 개인들은 타인의 정보를 습득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기 때문임.
- 그러나 타인의 정보 중에는 정보주체인 타인의 인격적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도 있고, 그 타인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정보도 있을 것이므로 개인의 이러한 권리는 무한정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사회는 그 타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것을 프라이버시권 또는 자기정보 통제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함.
- 20세기 후반 들어 컴퓨터나 통신기기 등 정보 처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인류사회는 산업사회(Industrial Society)에서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변모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사회의 도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량적 처리를 가능하게 한 반면, 개인의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보호되지 못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고 있음.

- 이에 1973년 스웨덴을 필두로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정보법률들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분야별 개인정보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음.

■ 이러한 개인정보법률들은 정보사회에 있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의 증대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률들은 정보의 종류를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보의 활용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측면도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음.

- 특히, 2014년 1월 8일 검찰의 발표 이후 한동안 우리나라를 들썩이게 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사태는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 단계 높여 놓는 강력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됨.

–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경험하였으나, 이번 카드사 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은 기존의 대책과는 차원과 강도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임.

- 이에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2014년을 ‘개인정보보호 3.0시대’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우리나라에 개인정보 관련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1995년을 ‘개인정보보호 1.0시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을 ‘개인정보보호 2.0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3.0시대가 단순히 보호만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보호와 더불어 활용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인 것으로 사료됨.

- 개인정보도 사회적 자산의 하나로서 활용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임.
- 보험산업에 있어서도 보험개인정보는 관련 법제의 불명확성으로 활용과 보호의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의 단체성, 대수의 법칙,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하여 보험정보의 활용가능성이 다른 산업보다 크나, 동의주의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함.
    - 보험거래의 경우는 거래당사자와 정보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 모든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 수령이 곤란하고, 개별 할인·할증제도의 운영이나 보험사기 방지, 중복보험 확인 등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보의 공동이용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짐.
  -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라는 대명제하에 보험정보의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제한되거나 금지된다면,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손실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임.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험정보가 마케팅에 지나치게 노출되어 있어 보험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임.
  - 더불어 최근 국회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실무상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법률의 다기화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산업의 발전과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보험정보의 건전한 활용과 프라이버시권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보험분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법제의 다기화 및 중첩적용에 대한 문제점 및 해소방안을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보험정보주체의 보호 강화방안 및 보험산업의 특성 반영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함.

##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본 연구의 주제는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으로서 ‘보험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을 ‘개인정보법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여기서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기본계획, 지침, 국제협력 등),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 등), 개인정보의 관리(안전조치의무, 처리방침, 책임자 지정, 영향평가, 유출통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열람, 정정, 삭제,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의 처리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폭넓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접점을 모색하는 데에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분야인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므로(제2조 제2호),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개인정보의 처리 중에서도 “수집, 이용, 제공, 위탁, 파기”로 제한하여 논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보험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논리적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함.

○ 먼저, 서론에 이어 제2장(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에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적 특성과 그 종류의 분석을 통해, 보험개인정보의 개념과 보완점을 도출해보고, 현재 보험회사에서 수집·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현황을 살펴봄.

○ 제3장(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은 크게 3개의 절로 구성함.

- 제1절(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의 현황 및 체계와 각 보험개인정보법률의 연혁 및 특징을 살펴본 후,
- 제2절(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검토)에서는 보험개인정보 관계법령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현 체제하에서의 법 적용 원칙, 법 적용에 따른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를 살펴봄.
- 그리고 제3절(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운영상 문제점)에서는 보험개인정보법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적용 법률 다기화에 따른 법률 불명확과 중첩적용 문제, 보험산업의 특성 미반영 문제를 제기함.
- 제4장(제 외국의 입법례 및 운영실태)에서는 미국·영국·프랑스·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 체계와 보험개인정보의 활용 현황을 살펴봄.
- 마지막으로, 제5장(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에서는 제3장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제1절에서는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해소방안을 1단계(보험개인정보의 해석원칙 및 처리기준 마련), 2단계(개인정보법률 간 체계 재정비) 및 3단계(적용 법률 일원화)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함.
  - 제2절에서는 보험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 강화방안으로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 강화, 보험회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및 사전동의 수집제도의 합리화를 제시함.
  - 제3절에서는 보험개인정보의 활용성 제고방안으로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및 언더라이팅에의 활용 근거 마련을 제시함.

---

## II.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및 분류

---

### 1. 개인정보의 개념

-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므로 사람들이 타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왔음.
  - 국가나 조직은 그 구성원들을 관리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적 거래에 있어서도 각 개인은 타인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거래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타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19세기 후반부터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법의 개념하에 법적 간섭이 시작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정보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타인에 대한 정보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 처리를 규제하게 되었음.
  - 최근에는 컴퓨터 및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인터넷, SNS 등의 혁명적 확산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인류의 주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법제도 규제를 강화해 가고 있는 실정임.
- 여기서 개인정보법제의 보호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개인정보에 포함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해당 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법제의 규제를 받느냐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임.
  - 이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외 선진 제국에서의 개인정보 정의를

요약하고 그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함.

■ 먼저, 사전적(辭典的) 측면에서 볼 때 개인정보란 ‘개인’과 ‘정보’라는 명사가 결합된 복합명사로서 이 두 명사에 대한 개념 분석을 통해 그 단어가 의미하고자 하는 뜻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임.

○ 먼저, ‘정보(情報)’는 유럽과 미국에서 information, data, record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자료, 데이터 또는 기록 등을 대표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해석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sup>1)</sup>

○ 한편, ‘개인(個人)’은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sup>2)</sup>’을 의미하는 명사이지만 ‘정보’라는 명사 앞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개인에 관한’이나 ‘사적(私的)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sup>3)</sup>

- 여기서 공적인 정보와 대립되는 개념인 “사적인”이라는 의미와 “개인에 관한”이라는 의미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나<sup>4)</sup>, 사적(私的)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개인에 관계된 또는 그런 것’으로서의 뜻을 가지므로 양자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개인”은 ‘낱낱의 사람’으로서 그 개념상 법인과 단체 등을 제외한 자연인(自然人)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sup>5)</sup>

---

1)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정보”를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1호: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

3) 유럽과 미국에서도 개인정보라는 용어에는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사로운 등을 의미하는 personal, individual 또는 privat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4) 권건보(2005), pp.9~12.

5)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에서도 ‘법인 또는 개인’(「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보험업법」 제2조·제208조 등)이나 ‘단체 또는 개인’(가사소송법 제8조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 결론적으로 “개인정보”란 사전적 측면에서는 ‘낱알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자료(데이터, 기록)’라고 폭 넓게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개인정보의 개념은 법적 보호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광범위하므로 그 규제대상을 보다 구체화·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물론 같은 개인정보라 할지라도 그 사용목적이나 사용주체 또는 처리방법이 상이할 경우 보호의 범위도 상이해질 수 있고 보호의 필요성에도 주관적인 관점이 작용하므로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를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해 놓을 필요도 있음.
  - 그러나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해서 모든 개인정보가 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각국의 개인정보법률들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 먼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제국의 개인정보 관련 법률상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인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라는 큰 틀의 범주 내에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1980년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가 간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이사회 권고」<sup>6)</sup>에서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데이터 주체)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함.
  - 유럽연합(EU)의 1995년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동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sup>7)</sup> 제2조는 개인

---

고 있어, 법상으로도 “개인”이란 용어에는 법인과 단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6)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Annex to the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f 23rd September 1980, OECD, pt.1.cl.(1)(b).
- 7) EU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J 1995 L281/31.

정보를 “신체·정신·심리·경제·문화·사회적 특성 등의 요소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라고 정의함.

- 미국의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1974)은 정보라는 용어 대신 기록(recor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sup>8)</sup>에 관한 정보나 이를 수집 또는 집합한 것으로서 교육정보, 재무거래, 병력 및 전과 또는 취업경력 등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명 또는 신분번호, 기호나 지문, 성문(聲紋) 또는 사진 등 개인에게 배정된 신분의 식별을 위한 특기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1998)은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를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면서 여기에는 성명, 주소,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사회보장번호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함.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개인데이터(personal data)를 “당해 데이터 및 데이터 관리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나 기타의 정보로부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데이터”로 정의하고, 여기에는 개인에 대하여 표현된 의견이나 데이터관리자의 모든 지시사항, 그 사람과 관계있는 모든 타인에 관한 의견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함.
-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해당정보에 포함된 이름,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쉽게 조회 비교할 수 있으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으로 정의함.

---

8) 동법은 개인(individual)을 “미합중국시민 또는 적법하게 영주를 허가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전자서명법」 등에서 개인정보를 거의 유사하게 정의하고 있으며(〈표 II-1〉 참조), 가장 최근에 제정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인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정의를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음.

- 이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됨.
-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의 내면적 사실, 신체나 재산상의 특질, 사회적 지위나 속성에 관하여 식별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의 총체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임.<sup>9)</sup>

〈표 II-1〉 우리나라 개인정보법제상 개인정보의 정의

근거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6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3호)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 2005.5.26. 99헌마513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9) 총무처(1994), p.31.

- 이러한 개인정보의 정의를 다시 분해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개념적 요소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의 분석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
  - 둘째,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임.
  - 셋째,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임.

### 가.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나 사회, 단체 등을 구성하는 낱낱의 사람으로서의 ‘개인’에 관한 정보임.
  -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만 해당되며,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그 정보가 비밀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라 하더라도 그 구성원 개개인의 인적사항과 관계된 정보라면 당연히 그 한도 내에서 개인정보가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정보는 ‘관련성’과 ‘임의성’이라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짐.<sup>10)</sup>
  - 먼저,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에 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그 개인과 관련성을 지닌 정보여야 함.
    - 특정 개인과 ‘관련성’을 지니는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정체성을 구별하거나 밝혀낼 수 있는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생일, 주소,

10) 행정안전부(2011), pp.7-8 참조

바이오정보 등)나 특정 개인의 과거·현재의 상황이나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정보(교육상황, 재정상황, 진료 및 건강 상태 등)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종류, 형태, 성격, 형식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는 한 모든 종류 및 모든 형태의 정보가 개인정보가 될 수 있는 바, 이를 임의성이라고 함.
  -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의 신장, 체중, 나이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에서부터, 직장에서 직원에 대한 근무평거나 금융기관에서 개인의 신용도 평가 등 그 사람에 대한 제3자의 의견·평가와 같은 주관적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됨.

#### 나.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국내·외의 대부분의 개인정보법률들은 생존하는 자연인을 전제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어,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있음.
  - 다만, 사자(死者)의 정보가 생존하는 유족의 개인정보와 연결되는 경우라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의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생존하는 개인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호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한 개인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임.
- 사자(死者)의 정보가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이유는 개인정보의 보호법익이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이 ‘인격권’으로서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임.<sup>11)</sup>

11) 행정안전부(2011), p.7.

- 즉, 사망자의 정보는 상속이 불가능하고 그 정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주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주체를 생존하는 개인에 한정하는 것임.
-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사자(死者)의 “비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음.<sup>12)</sup>
  - 이와 더불어 사자(死者)의 정보가 허위의 사실일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사자의 명예훼손’의 죄(제308조<sup>13)</sup>)를 구성할 수 있음.

#### 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운데서도 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항으로 한정될 필요가 있음.
  -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개인의 식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정보의 자유나 알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게 될 개연성이 커지기 때문임.
  - 따라서 개인정보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즉 식별성이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음.
- 여기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란 협의(狹義)로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만으로 바로 당해 개인을 구분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또는

12)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62조 제6호에서는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13)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식별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 학교·직장·단체 등 소속된 곳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성명, 학번, 사번 등), 기업의 고객 중에서 특정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성명, ID 등 고객관리정보, 결제정보, 재화·용역 공급을 위한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이 이에 해당함.<sup>14)</sup>

■ 이에 더하여,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곤란하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가능정보 또는 간접식별정보)도 개인정보로 분류됨.

- 개인정보보호법도 개인정보의 개념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음.
  - 예컨대,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파일이라도 생년월일이 기록되어 있어 생년월일 순으로 검색한 후 그 결과를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기록되어 있는 파일과 대조하여 쉽게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sup>15)</sup>
-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6조는 어떤 사람이 식별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임의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식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식별정보나 식별가능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는 ‘비식별정보’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비식별정보 또한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14) 행정안전부(2011), p.8.

15) 황인호(2001), p.73.

등의 발달로 인하여 식별가능정보로의 편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sup>16)</sup>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준하는 보호 의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 2. 개인정보의 분류

- 개인정보는 다양한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관리주체, 개인정보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분류되고 있음.<sup>17)</sup>
  - 개인정보를 분류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유형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유형별로 법을 구분하여 적용함으로써 차별적 규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음.
- 개인정보는 그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로 구분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는 수집단계에서부터 각종 행정법규의 정확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정보인데 비하여,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관리되는 정보임.

16) 전통적으로 식별성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는 정보들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미국의 유명 인터넷서비스 회사인 AOL은 2006. 8. 3. 온라인 행동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65만 명의 AOL 검색엔진 이용자들의 2천 만건의 검색 기록을 온라인상에 공개했음. AOL은 그와 같은 검색기록을 공개하기에 앞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했으나,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각 이용자에게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여 공개하였음. 하지만, 4417749라는 번호가 붙여진 이용자가 Georgia주 Lilburn에 거주하는 62세의 미망인인 Thelma Arnold라는 사실이 밝혀졌음(“A Face Is Exposed for AOL Searcher No. 4417749”, 2006. 8. 9; 장주봉(2012), pp.51~52.에서 재인용).

17) 권건보(2001, pp.19~20), 김성태(2007, pp.23~40), 김연수(2001, pp.34~35), 황인호(2001, pp.77~81) 참조

○ 공공행정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적 관점에서 법적 근거를 요하는 반면, 민간을 규율하는 법 원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름.

■ 개인정보는 그 성격에 따른 분류로서, 그 식별성을 기준으로 직접식별 개인정보와 간접식별 개인정보, 그 보호 정도를 기준으로 절대적 개인정보와 상대적 개인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직접식별 개인정보는 그 정보 자체에 의해 특정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이며, 간접식별 개인정보는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함으로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가능정보)를 말함.

○ 절대적 개인정보는 그 공개를 절대적으로 제한하여 가장 강력한 보호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DNA정보, 건강정보 등과 같은 민감정보(sensitive information)를 말하며, 상대적 개인정보는 법령이나 계약 또는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해 공개나 사용이 가능한 정보를 말함.

■ 개인정보의 내용적 분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그 내용에 따라 <표 II-2>와 같이 분류하고 있음.

○ 동 분류는 Weible(1993)의 분류<sup>18)</sup>에 기초하되,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한 몇 가지 개인정보유형(통신정보, 위치정보, 신체정보)을 추가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

18) Weible, R.J.(1993), pp.166~168.

〈표 II-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분류표

유형 구분	개인정보 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 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 수익정보	보험(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법적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기록, 도박성향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ipc.go.kr/>)

### 3. 보험개인정보의 개념과 분류

#### 가. 보험개인정보의 개념

- “보험개인정보”란 넓게는 앞에서 검토한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문구상으로는 ‘보험정보 중 개인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보험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 보험정보의 주체는 단체(법인 등을 포함)와 개인으로 구분되므로 단체가 정보주체가 아닌 대부분의 보험정보는 곧 보험개인정보에 해당됨.
    - 보험정보는 계약자가 개인인 ‘개인계약 보험정보’와 계약자가 단체인 ‘단체계약 보험정보’로 구분 가능하며, 여기서 개인계약 보험정보는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됨.
    - 한편, 단체계약 보험정보 중에서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 또는 피해자가 개인인 경우가 존재하는 바, 이 경우에는 단체계약 보험정보임과 동시에 개인정보가 되므로 개인정보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보험개인정보와 보험정보의 개념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보험정보의 개념이 중요해짐.
  
- 보험업법상 보험의 정의에서 유추적용해 볼 때, 보험정보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 이는 간략하게 보험거래정보로 정의될 수 있으며, 보험거래정보는 다시 보험계약정보와 보험사고정보(보험금지급정보 포함)로 대별할 수 있음.
    - 보험계약정보는 위험단체에의 가입내역으로서 보험의 목적, 보험기간, 보험조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함.
    - 보험사고정보는 담보위험의 발생과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내역으로서 사고일시, 사고원인, 사고금액, 피해자,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수익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함.

- 상기의 보험거래정보는 순수한 보험정보로서 협의(狹義)의 보험정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제로 보험회사가 보험거래와 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이보다 많은 종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음.

- 보험고객정보(가망자 정보, 기존 구매자 정보, 우수고객 정보, 제휴업체 제공 고객정보 등), 할인·할증정보(교통법규 위반정보 등), 신용정보(보험계약대출 정보, 카드발급 정보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인터넷 회원정보 등이 그 예임.
- 이러한 정보들은 보험거래와 “관련된” 정보로서 순수한 보험정보와 동일한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광의의 보험개인정보의 개념이 필요함.
- 따라서 광의의 보험개인정보는 ‘보험거래 및 그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로 폭넓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금융투자상품 관련 개인정보는 보험거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라고 할지라도, 타 업종의 금융투자상품과 일관성 있는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정보로 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대출정보 등 신용정보 또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해 일률적으로 집중·관리되고 있으므로 보험정보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나. 보험개인정보의 분류 및 수집 현황

■ 전술한 ‘개인정보의 분류’를 참고하여 보험개인정보를 분류한다면 먼저, 보험개인정보도 그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는 행정법규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상의 소관업무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및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수집·이용하는 보험개인정보가 이에 해당함.

-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정보통신망법 등에 의거하여 소비자로부터 직접 보험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보험회사와 보험회사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신용집중기관인 보험협회가 수집·이용하는 보험개인정보를 의미함.

■ 보험개인정보는 또한 그 성격에 따라 개인식별정보, 민감정보 및 일반 보험개인정보로 구분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식별정보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꼽을 수 있음.
  -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거래는 실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개인식별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 보험회사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의거 민감정보의 수집이 금지되며, 질병정보만을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어 수집·이용할 수 있을 뿐임.

■ 보험개인정보의 내용상의 분류는 수집 방법상 또는 수집 목적상의 분류로 이해될 수 있음.

-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분류하면 <표 II-3>과 같이 보험거래 관련 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마케팅 관련 정보, 보안관리 관련 정보,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정보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이 중 보험거래 관련 정보는 순수한 보험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그 외에는 직원의 인사관리 관련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험거래에 부수된 업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광의의 보험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표 Ⅱ-3〉 보험개인정보의 내용상(수집목적상) 분류 및 수집항목

내용 구분	세부 내역	
보험거래 관련 정보	보험계약 체결 전 사전조회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정보
		보험금지급정보
		보험대상자의 질병정보
		소득, 재산 등의 재정정보
	보험금·가불금 지급	보험금지급 및 관리 정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채권결손처분관리정보	
부가서비스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보험거래 관련)		
마케팅 정보(보험거래 관련)		
금융거래 관련 정보	전자금융거래 회원가입	
	대출계약 및 대출금 지급	대출계약정보
		신용평가정보
		신용능력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금융투자상품 거래정보	개인식별정보
투자상품 거래 관련 정보		
투자목적 판단에 필요한 정보		
기타 정보	보안관리 관련 정보	전자금융거래의 내용 추적 및 검색 관련 정보
		보안정책 수립용 통계정보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기타 모집종사자 관련 정보
	인터넷 회원 관련 정보	
	마케팅 정보	
보험사 직원 관련 정보		

---

## Ⅲ.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분석 및 문제점

---

### 1.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 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 현황 및 체계

- 전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 들어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 스웨덴을 필두로 대부분의 국가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제정하기에 이룸.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분야별 개인정보법률들을 제정·시행하여 왔음.
  - 이외에도 「보험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전자금융거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음.
- 2011년 이전까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별 및 분야별 필요성에 따라 각기 이에 상응하는 개별 개인정보법률이 제정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분야별 접근방식(sectoral approach)하에서는 개별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행위를 규제할 수 없는 법률의 사

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개인정보법률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의 기본체제는 다음의 <그림 Ⅲ-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Ⅲ-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체계

	규제대상(분야)	규제법률
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공공부문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사적부문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통신사업자	통신비밀보호법
	의료기관	의료법
	⋮	⋮

#### 나. 보험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요

- 보험개인정보에 적용될 수 있는 주된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보험업법 등을 꼽을 수 있음.
- 이하에서는 보험개인정보에 적용되는 주된 법률을 중심으로 입법목적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대상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봄.

## 1) 개인정보보호법

### 가) 입법배경 및 구성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분야별 접근방식하에서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온 개인정보보호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더불어 2000년 이후 크고 작은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점이 반영된 결과임.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조치 마련,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적용범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다만,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표 Ⅲ-1〉 참조)에는 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는 개인정보이지만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함(법 제23조, 제24조).

○ 최근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에 대하여 동의주의를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2014.8. 시행)하였음.

〈표 Ⅲ-1〉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예외 사유

구분	동의예외 사유
수집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④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공	① 수집의 ①·②·④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집·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함(제15조 제2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법 제17조).
- 여기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함.<sup>19)</sup>
  - 즉, 개인정보 수기문서를 전달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 등도 제3자 제공에 모두 포함됨.

## 라)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제21조).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가) 입법목적 및 구성

- 신용정보법은 그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개인신용정보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19) 행정안전부(2011), p.91.

○ 1995년에 제정된 신용정보법은 기존에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단편적 법률들과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제정된 금융기관 협약 및 관련 정부지침을 집대성한, 국내 신용정보의 유통과 관리에 관한 체계를 관장하는 법률임.

■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은 ① 신용정보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개념정의 부분, ②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규제 부분, ③ 신용정보의 유통에 관한 부분, ④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 대별됨.

○ 신용정보법은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사이에서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를 유통하는 경우만을 인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은 이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중심으로 한 신용정보의 유통을 특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 나) 신용정보의 수집 및 조사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는 자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함)으로 한정하고 있음(법 제15조).

○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함.

○ 신용정보법은 ①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②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③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④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등의 수집과 조사를 금지하고 있음(법 제16조).

#### 다)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공목적

-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못함(법 제32조).
  -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에는 제공대상자, 이용목적,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명기한 동의서에 의하여 당해 개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시행령 제28조).
  - 법인의 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이를 제공함에 있어서 신용정보주체인 법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법 제33조).
  - 동 제한은 정보주체가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 간의 제공·이용의 경우 등 법정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라)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는 일정한 시설 및 인력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짐.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 및 교환대상자의 범위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구분됨(법 제25조).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은 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② 신용정보회사, ③ 다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상호 간에서만 신용정보를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음.

〈표 Ⅲ-2〉 신용정보법상 동의예외 사유

구분	동의예외 사유
목적 외 이용	①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공 시의 ①부터 ⑨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	①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②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③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④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⑥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⑧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⑨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 입법목적 및 구성

■ 정보통신망법은 기존의 「전산망보급 확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인 정보 보호규정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전면 개정하여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 법률임.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sup>20)</sup>상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정의 및 보호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동일함.

○ 정보통신망법도 신용정보법과 유사하게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 할 수 있음.

- 정보통신망법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문은 크게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인 수집제한(제23조)과 이용제한(제24조), ②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제30조 내지 32조) 및 ③ 비밀 등의 보호(제49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제22조, 제24조의2).

〈표 Ⅲ-3〉 정보통신망법상 고지사항

수집 시	제공 시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20)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제23조).
  - 다만,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아래의 예외 사유 외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수집·이용할 수 없음(제23조의2).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제24조).

〈표 Ⅲ-4〉 정보통신망법상 동의예외 사유

구분	동의예외 사유
수집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공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 동법은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고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비대면성·비서면성 등의 전자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정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재정경제부가 2002년 처음 발의하고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 전자금융거래법은 총 7개 장 51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총칙(제1장),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제2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제3장), 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및 업무(제4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제5장), 보칙(제6장)과 벌칙(제7장)이 그것임.
  
-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됨(제3조).
  - 다만,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동법은 주로 지급거래와 관련된 전자적 방식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 동법 제3장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부분으로서, 안전성 확보의무,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 및 보존,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약관의 명시와 통지,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이의제기와 분쟁처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특히, 동법 제21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장)에서는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세부적인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을 규정함.

## 5) 보험업법

-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은 보험모집 시의 준수사항과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제96조 및 시행령 제43조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 시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르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안 되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해 동의를 하거나 해당 보험회사나 보험중개사와 계약실적이 있는 자,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해 동의한 자만을 대상으로 행할 수 있음.
  - 그리고 특히 전화를 통한 모집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보험정보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의 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나,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와 질병에 관한 통계 이용 시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제176조).
  - 보험업 감독규정에서는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취급자·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제9-5조).
    - 이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실제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하고, 이용자별 접속내역을 관리하고 사용통계를 작성하여야 함.

##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의 비교·검토<sup>21)</sup>

### 가. 보험개인정보 관계법령 간의 적용 순위

-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동법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기존 개인정보 관련 개별 법령과 중첩되거나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동 법률들 간 적용순위나 해석기준에 있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실무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함.

- 먼저, 보험개인정보 관련 법률 간 적용순위와 관련된 법 적용의 일반원칙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음.

○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특별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적용되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임.

－ 특별법이란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특정의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 등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률을 말함.

－ 원래 특별법은 정의(正義) 또는 형평(衡平)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

---

21)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정부와 국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2014년 5월 현재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부분도 있고 개정안 발의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함. 물론 동 개정안들에는 보고서의 본 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함.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에는 2014년 3월 24일 이미 일부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된 부분도 존재함.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법제의 문제점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2014년 2월 말 현재” 유효한 개인정보법률들을 기준으로 비교·검토 작업을 수행하였음.

- 그러므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법은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됨.
  - 신법 우선의 원칙이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구법(舊法)과 신법(新法)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에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임.
    - 신법 우선의 원칙은 동등한 법률 간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신법 우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 원칙 및 기준을 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규정(법 제 6조)하고 있으므로 보험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함.
-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보험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등의 개별법이 보험개인정보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함.
  - 따라서 특별법인 개별법들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중복 또는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기 개별법들이 우선 적용되고, 개별법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임.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최근 제정되어 일부 특별법에 비하여 신법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임.
- 특별법에 해당하는 개별법률 간 중복 또는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법률을 우선 적용할 것인가는 개별 법률의 입법 목적 및 대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음.
- 안전행정부 등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이라고 함)은 다음과 같이 관계법률 간의 적용 순서를 설명하고 있음.<sup>22)</sup>

- ‘개인신용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되,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등 개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함.
  -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은행법 등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우선 적용하고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함.
  - ‘신용정보 중 기업·법인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되 신용정보법 미적용 업종은 개별법률을 적용함.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과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지급 정보 등 보험정보는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에 포함됨)<sup>23)</sup>을 종합하여 보면,
- 보험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와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법에서 특별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이 다음으로 적용되며, 마지막으로 상기 개별법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통신망을 통하여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온라인보험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sup>24)</sup>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에서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한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22)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3), p.12.

23) 2002.9.27. 재정부 질의회신(은행 41207-404)

24)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pp.13~18.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웹사이트를 통해 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되나 신용정보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시(說示)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제1항은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상행위를 하는 온라인보험과 같은 경우 정보통신망법이 일부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음.

■ 따라서 온라인보험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하면 보험개인정보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개별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가장 후순위로 보충적용됨.
- 정보통신망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은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이 정보통신망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규정들 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음.
  - 따라서 개별법 내에서는 보험업법 등 관계규정이 특별법으로서 신용정보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개인정보에 관하여 일반보험(오프라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순으로 적용하고, 온라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순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Ⅲ-5〉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간 적용 순위

구분	법률 간 적용 순위
오프라인보험	보험업법 등 개별법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온라인보험	보험업법 등 개별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나. 보험개인정보의 수집

### 1)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

#### 가) 개인정보법률 규정

-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신용정보법은 개인의 “질병 정보”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받아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2조).
  - 다만, 동법은 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 중 ①항은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과금정보, 통화사실기록, 접속로그 등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보로서 실시간으로 생성·수집되지만 매번 고지·동의 받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 예외를 인정한 것임.<sup>25)</sup>

– 상기 예외사유들은 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개인정보의 처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온라인보험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사업자는 동의를 얻기 전에 이용자에게 미리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알려주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5조).

○ 다만, 동법은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5)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pp.29~30.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보수집의 목적별 또는 대상수집정보별로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제22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얻기 전에 정보주체에게 미리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④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지사항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미리 알려주어야 할 사항”에 위 ④항을 추가한 것임.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에 관하여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1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함.<sup>26)27)</sup>

## 나) 적용기준 검토

-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되므로 동의를 수령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두 가능함.

26)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3), pp.16~18.

27)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질병정보에 한하여 동의를 얻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용정보법은 신용거래에 있어 질병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신용거래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의 제공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신용정보주체의 청약 등에는 이미 신용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묵시적 동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동의를 수령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여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1안)이 법논리상 가능함.
- 그러나 기존 입법상의 공백을 메우고자 새로이 입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수집 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2안)이 지배적임.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금융분야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2안의 의견인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현재 보험회사도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모두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수령하고 있는 실정임.

## 2)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 가) 개인정보법률 규정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제32조)

-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자(제공받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이외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이전 수집자가 제3자 제공동의를 받았을 것이므로 추가적 동의는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허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임을 전제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0조).
-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의 수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용정보법과 유사하게, 정보의 수집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수집동의를 받거나 고지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허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임을 전제로, 금융기관은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게 수집된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부정 수집된 정보인 것을 알면서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음.<sup>28)</sup>

28)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3), p.19.

나) 적용기준 검토

-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는 보험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제3자 제공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것임을 전제로, 보험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는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음.
  - 그러나 보험개인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하는 자가 수집동의를 수령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보험업법 등 일부 특별법에 수집근거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경찰청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 보험요율산출기관(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에게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여 순보험료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음. 또한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아 보유하는 개인정보를 순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보험업법 제176조).
    - 다만, 상기 규정들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보험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

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위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표 Ⅲ-6〉 개인정보법률상 “수집” 관련 규정

구분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비고	
정보주체로부터 수집	동의 여부	규정 없음 단, 질병정보는 동의수령	동의수령	동의수령 (필수, 선택 구분)	의견 대립 1. 신용정보법 우선적용 의견 → 동의, 고지 생략 - 절차간소화 취지 - 묵시적 동의 - 필수적 항목
	고지 사항	규정 없음	① 수집목적 ② 수집항목 ③ 보유기간	①②③+ ④ 거부 시 불이익 내용	2. 타법 보충적용 의견 → 동의, 고지(4가지)수령 - 입법공백 보충 취지
	동의 예외 사유	규정 없음	i 계약이행필요 ii 요금정산 iii 타법규정	i 법률규정 ii 공공기관 소관업무 iii 계약이행 필요 iv 급박한 필요 v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	신용조회회사 등	수집자의 동의 고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규정 없음 (동의×, 고지×)	정보주체 요구 시 통지 ① 수집출처 ② 처리목적 ③ 정지요구권 여부	-
	기타	규정 없음 (동의×, 고지×)			

## 다. 보험개인정보의 이용

### 1) 개인정보법률 규정

#### 가) 수집 목적 내 이용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제33조)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정보통신망법(제24조)도 수집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의 체결, 해지, 취소 및 보험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이 신용정보법 제24조 제1항(현행 33조)의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바 있음.<sup>29)</sup>

○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 해지, 취소, 보험금 지급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보험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임.

#### 나) 수집 목적 외 이용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가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하였거나, 동법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제33조).

○ 신용정보주체가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 다른 목적이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모든 목적을 뜻함.

○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29) 2003. 2. 14.자 금감원 질의회신(문서번호 신용정 1113-00081)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수집 목적 외 이용에 동의를 하였거나, 동법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제18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차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동법에 열거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동의 없이도 수집 목적 외 이용이 허용되나,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됨.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4호)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
- 신용정보법은 정보 수집목적외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신용정보법상 목적 외 이용은 상기 목적 이외의 모든 이용을 목적 외 이용이라고 할 것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신용정보법과 달리 그 수집목적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 수집 전 정보주체에게 알린 수집의 목적” 이외의 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이라 할 것임.

■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법 등과는 달리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얻는 경우 수집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됨.

- 정보통신망법 제24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이나 동법 제22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제24조의 해석상 본래 수집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 이용자로부터 재차 동의를 받은 경우 이 역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에 포섭되므로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용정보법 제33조 내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정보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음.<sup>30)</sup>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목적 외 이용에 관하여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3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있음.<sup>31)</sup>

## 2) 적용기준 검토

-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험회사는 수집의 목적(보험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할 것이고, 동 목적 외로 이용하

30)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3), pp.20~21.

31) 보험개인정보(유권해석상 개인신용정보에 포함)가 신용정보법 제33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집 목적 외로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얻거나, 각 법에 열거된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관계법령에 열거된 예외사유 중 일부가 상이하므로 신용정보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가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신용정보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목적 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타법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달리 다른 법률에 따른 활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사유를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표 Ⅲ-7〉 개인정보법률상 “이용” 관련 규정

구분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비고
원칙	상거래 관계의 설정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목적(§33)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이용(§24)	수집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15)	- 신용정보법 상 규정되지 않은 예외사유가 보충적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 불분명
예외 (목적 외 이용)	i 타목적 이용동의 ii 직접제공받은 목적 iii 제3자 제공동의 면제사유(§32④) · 집중관리활용목적 · 계약이행 불가피 · 법원 제출명령 등	① 타목적 동의 ② 수집동의 면제사유 i 계약이행에 불가피 ii 요금정산	i 타목적 이용동의 ii 법령상 의무 준수 iii 통계작성, 학술연구 iv 공공기관 소관업무 수행에 불가피 v 급박한 필요 vi 정당한 이익 달성	

## 라. 보험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개인정보법을 규정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32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각호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을 법적이무는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가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제공·이용자에게 있음.
  - 다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sup>32)</sup>하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공하는 자(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는 제공받으려는 자가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동의절차 없이도 제공이 허용됨(제32조 제4항).
  -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사무실·점포 등에서의 비치·열람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음. i)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ii)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상기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제공자 또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주체에게 이러한 제공사실을 알려야 함. 특히,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신용정보회사등이 위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목적을 확인하여야 함.
- 정보통신망법은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4조의2).
-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예외사유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2조 제2항 제2호)는 보험개인정보 처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제22조 제2항 제3호)는 일반적인 타법적용 예외사항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제3자 제공 예외 사유의 규정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적용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고, 목적 외 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7조 제1항 제1호).

○ 다만, 수집목적 내 제공의 경우(제15조 1항 제2호·제3호·제5호)로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제3자 제공이 가능함(제17조 제1항 제2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제18조 제2항),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4호)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6호)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7호)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8호)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
-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목적 외 제공사유 중 별도 동의를 수령한 경우만 고지의무를 부과(제18조 제3항)하고 있을 뿐, 신용정보법과 달리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 의무 규정이 부재함.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에 따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제공이 가능하다는 적용원칙을 밝히고 있음.<sup>33)</sup>

-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고, 신용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고지만으로 제공 가능함.
- 그 밖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 외 제공의 경우에는 별도 동의까지 받아야 함. 다만 개인정보

33) 위 가이드라인은 보험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적용하여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함.

## 2) 적용기준 검토

- 신용정보법에 따라 목적 외 또는 목적 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있으면 보험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고 목적 외 제공이라 하여 앞서의 제공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신용정보법에는 제3자 제공에 관하여 목적 내 제공인지 목적 외 제공인지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목적 외 제공이라 하여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 신용정보법은 동의를 받기에 앞서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가 이용목적 등을 알면서도 제3자 제공에 동의하였다면 목적 외 제공에 대한 동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목적 외 제공이라 하여 동의를 반복하는 것은 절차만 번거롭게 할 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큰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 수집 목적 외 제공이라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여 별도 동의받을 것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보험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는 준수하여야 함.

- 다만, 관계법령에 열거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사유 중 일부가 상이하므로 신용정보법 내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유가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신용정보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타법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법률에 따른 활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동 규정들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유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그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절차가 상이한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신용정보법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와 같은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외 제공의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신용정보법은 이와 같은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상이하여 그 해당 사유에 따라서 적용 절차가 다른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법제의 통일성을 위하여 신용정보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외 제공에 관한 사유 및 절차를 추가 규정하거나, 보험업법에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외 제공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도 그 개선방안 중 하나일 것임.

〈표 Ⅲ-8〉 개인정보법률상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구분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비고
원칙	- 제공자 동의수령 (§32①) · 고지 a. 제공받는 자 b. 이용목적 c. 제공항목 d. 이용기간 - 수집자 동의수령 (§32②) · 조회회사, 집중기관 · 고지: 신용 하락가능성	- 사전동의 (§24의2 ①) - 고지 a. 제공받는 자 b. 이용목적 c. 제공항목 d. 이용기간	- 사전동의 (§17① i) - 고지 (§17②) a. 제공받는 자 b. 이용목적 c. 제공항목 d. 이용기간 e. 불이익 내용	- 사전동의 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고지 사항 보충적용 여부 - 타법상 예외사유 및 목적 외 제공사유 보충적용 여부
예외	- 사전동의예외 (§32④) a. 집중관리활용목적 b. 계약이행목적 위탁 c. 채권추심 목적 d. 법원의 제출명령 등	- 사전동의예외 (§22② ii, iii) a. 요금정산 b. 타법규정	- 사전동의예외: 수집목적 범위 내 제공 (§17① ii) a. 법령상 의무준수 b. 공공기관 소관업무수행 c. 급박한 필요	
목적 외 제공	- 목적 외 제공금지만 규정 (§43②)	- 목적 외 제공금지만 규정 (§24의2②)	- 목적 외 제공금지 (§18②) - 수집목적 외 제공 사유 (§18②) a. 별도 동의 b. 타법 규정 c. 급박한 필요 d. 통계작성, 학술연구 e. 공공기관 소관업무 등	

## 마. 고유식별정보(개인식별정보)의 처리

### 1) 개인정보법률 규정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식별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34조).

○ 신용정보법은 개인식별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수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동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개인식별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의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식별 정보)와 유사한 개념인 것으로 판단됨.
  - 참고적으로, 다수의 개인정보법률상 산재해 있는 용어인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개인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등과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 신용정보법의 개인식별정보(일체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신용정보법의 개인신용정보(개인식별정보 및 신용거래 정보 등)

- 개인식별정보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제공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요구에 따르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이용·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또한 개인식별정보가 아래와 같이 제32조 제4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의·제공받은 목적 외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채권추심,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이외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4조)

○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명시하고 있음.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을 뜻함.<sup>34)</sup>

-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그러나 단지 법령에서 단순히 신원·연령 확인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면<sup>35)</sup> 이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허용할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야 할 것임.

34) 행정안전부(2011), pp.149~150.

35)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상대방 연령 확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서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등

-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등록번호 이외에는 개인식별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규정(제23조의2)에 따르되,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고유식별정보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sup>36)</sup>
  
- 보험업법 시행령은 보험회사 등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민감정보 중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02조 제5항).
  - 동 시행령 조항은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험회사 등의 처리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괄 제정된 것임.
  -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36)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pp.67~68.

-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에 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 등 포함)의 구체적인 수집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을 적용하고, 이용 및 제공은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를 적용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하다고 해석함.<sup>37)</sup>

## 2) 적용기준 검토

- 신용정보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대신 개인식별정보의 이용·제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용정보법의 개인식별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보다 그 범위가 넓은 것으로 판단됨.
  - 신용정보법상 개인식별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에 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는 상기 개인식별정보 중 일부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에 한함.

37)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3), pp.25~26.

■ 신용정보법은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관해서는 ‘나. 보험개인정보의 수집’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나 개인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됨)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제32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다만,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개인신용정보에 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sup>38)</sup>의 사유를 모두 허용하는 반면, 개인식별정보의 경우에는 그 중 제4호 내지 제9호의 사유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제34조 제4항).

- 
- 38)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신용정보법은 개인식별정보의 타인 제공에 관하여 제공 동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sup>39)</sup>, 개인정보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 동의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요하고 있어, 보험회사 등의 개인식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신용정보법이 특별법이기 는 하나 신용정보법에서 고유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별도 동의를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식별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를 분리하여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개인식별정보의 제3자 제공의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제공에 관한 동의를 얻으면 족하나,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제공 동의 이외에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수집 목적 외 제공인 경우 그 수집 목적 외 제공에 관하여도 별도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신용정보법 제32조 4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기재된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sup>40)</sup>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각호<sup>41)</sup>에 기재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식별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됨.

39)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제32조 제1항)와 개인식별정보의 제공동의(제34조 제1항)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동의를 각각 수령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40)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41) 1.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2. 「상법」 제719조(「상법」 제726조에서 준용하는 재보험계약을 포함한다) 및 제726조의2에 따라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무: 제3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3. 「상법」 제733조에 따른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무: 보험수익자에 관한 고유식별정보  
 4. 「상법」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지급 등에 관한 사무: 피보험자에 관한 건강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 보험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한정하여 보더라도 정보의 종류, 제공 목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며, 적용절차가 복잡하고 반복적인 동의를 요하는 등 비효율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신용정보법이나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그 동의 등 절차도 보다 간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는 상위법인 보험업법상 위임근거 규정이 없어<sup>42)</sup> 입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거규정 신설 등이 필요함.

○ 상기 시행령 조항은 개인식별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만을 명시하고 있어 동 조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따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상기 시행령 조항이 고유식별정보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동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고유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식별정보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식별정보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관계규정의 입법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이상 개인식별정보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하며, 동 시행령에서 열거한 제3자를 위한 보험, 배상책임보험, 단체보험 등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등은 보험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보험회사가 100% 동의를 받기 어려운 실무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후자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2) 정부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하여 2012.1.6.자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를 포함한 210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상의 근거규정이 없는 시행령 조항이 탄생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해석상 혼란이 있으므로 보험업법 시행령상의 “고유식별정보”를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로 변경하거나, 신용정보법 내지 보험업법에 동 시행령 규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포함)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등 법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표 Ⅲ-9〉 개인정보법률상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관련 규정

구분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가이드라인
주민등록번호	별도 규정 없음	〈원칙〉(§23의2) 수집·이용금지 〈예외〉 a. 본인확인기관 지정 b. 법령에서 허용 c. 영업목적상 불가피	〈원칙〉(§24의2) 처리금지 〈예외〉 a.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 b. 급박한 생명 등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 c. 안행부령(미정)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수집) - 개인정보법 §21 및 §24 적용 (이용·제공) - 신용정보법 §32, §33, §34 적용 (목적 외 이용) - 개인정보법 §21 및 §24 적용
고유식별정보 <sup>1)</sup>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원칙〉(§24) 처리금지 〈예외〉 a. (별도)동의, 고지 b.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허용	
개인식별정보 <sup>2)</sup>	〈원칙〉(§34) - 수집관련규정 X - 제공 시 동의 필요 - 동의목적만 이용 〈예외〉 동의면제, 목적 외 제공·이용 a.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 b. §32④ iv~ix의 사유	별도 규정 없음	별도 규정 없음	

주: 1)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개인식별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 1) 개인정보법을 규정

- 신용정보법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식별정보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제23조의2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아이핀,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등)을 제공하여야 함(제23조의2 제2항).
-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제24조의2)<sup>43)</sup>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sup>44)</sup>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위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43) 동 규정은 2013. 8. 6. 신설되었고, 2014. 8. 7.부터 시행될 예정임.

44) 2014.5월 현재 규정된 사항 없음.

## 2) 적용기준 검토

- 신용정보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반면,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바, 보험개인정보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됨.
- 보험회사 등은 온라인 보험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오프라인 보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는 동 규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됨.
    - 다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에는 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한편, 신용정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또한 보험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됨.
  - 신용정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 식별정보를 제공·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의조항에서 개인신용정보에 “생존하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처리)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복잡한 해석에 의하는 것보다 보험업법 등에 보험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무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임.

## 사. 민감정보의 처리

### 1) 개인정보법을 규정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을 금지하고, 개인의 질병정보에 한하여 보험회사가 개인의 동의를 받아 처리(수집·조사, 이용, 제3자 제공 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제16조).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이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등을 수집·조사·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동 신용정보법 규정상의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등)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됨.

- 개인의 질병정보는 당해 개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필요한 보험의 계약 및 보험금 지급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함(시행령 제13조).

○ 이에 따라 질병정보 이외의 정보인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집·조사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됨.

■ 정보통신망법은 원칙적으로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집을 허용함(제23조 제1항).

■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이하 “민감정보”라 함)”을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를 허용함(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 또는 이용자의 “동의”를 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의 동의 또한 “별도 동의”로 해석하는 것이 법 체계상 또는 정보주체의 보호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보험업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행령 제102조에서 보험회사 등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민감정보 중 건강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sup>45)</sup>

45) 자세한 설명은 “마. 고유식별정보(개인식별정보)의 처리” 참조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제16조에 따라 개인의 정치적 사상 등 신용 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가 금지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해서는 안되며, 신용정보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감정보를 이용·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함.<sup>46)</sup>

## 2) 적용기준 검토

- 신용정보법상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정보통신망법상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는 조금씩 표현이 달리 명시되고 있을 뿐 모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즉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등은 질병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처리(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 등에서 처리가 금지되는 민감정보,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는 질병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무상 진단, 치료, 기왕증 등의 정보까지 상기 질병정보에 포함시켜 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질병정보”를 “건강정보”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46) 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3), pp.26-27.

-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건강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신용정보법의 질병정보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판단됨.

■ 한편,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민감정보의 처리 시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신용정보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질병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는 수집·조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신용정보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임.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집·조사를 전제로 한 이용 및 제3자 제공 역시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함.
-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제16조 제2항은 질병정보의 처리(수집, 조사, 이용,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동법 제16조 제1항은 질병정보 이외의 민감정보 등의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있을 뿐 별도로 이용·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상기 가이드라인이 신용정보회사등은 질병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이용·제공할 수 있고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판단됨.

〈표 Ⅲ-10〉 개인정보법률상 “민감정보” 관련 규정

구분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보험업법
수집 금지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23①)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23)	- 건강에 관한 정보 처리 가능 (영§102) a.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b. 보험관련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c. 보험전산망 운영업무 d. 중복보험계약 확인, 크로스 보더 보험계약 확인 e. 상호협정 수행업무 f. 제3자의 보험금지급 보장 사무 g. 차량수리비 실태 점검사무 h.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사무 i. 제3자 배상책임보험 사무 j. 보험수익자 지정·변경 사무 k. 단체보험계약 사무
예외	- 사전동의를 받은 질병에 관한 정보 (§16②)	i) 사전동의 ii)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허용된 경우	i) 별도동의 ii)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아. 보험개인정보의 위탁

### 1) 개인정보법률 규정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제17조 제1항),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7조 제2항).

- 여기서 계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면제 받음(제32조 제4항 제2호).
  -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됨(제42조 제1항).
  -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제43조 제4항).
  -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등을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시행령 제27조).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취급(수집, 이용, 제공, 관리, 파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5조 제1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이용자에게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알려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수탁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상기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제25조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제25조 제4항),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봄(제25조 제5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0조의2).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동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6조).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임.

– 여기서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을 말함(시행령 제28조 제1항).

○ 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위탁자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함(시행령 제28조 제2항).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하고, 과실 없이 이를 알릴 수 없는 경우 등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5항).

○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

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함(제26조 제4항).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봄(제26조 제6항).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개인신용정보 수집·조사의 위탁에 관해서는 신용정보법 제17조가 적용되고 그 밖의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가 적용된다고 해석함.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위 동의는 위탁자체에 대한 동의를 말하며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동의 없이 가능함.
-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 절차, 공시 등과 관련해서는 신용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신용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에 따라 위탁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함.
-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 처리 위탁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동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도 준수해야 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 2) 적용기준 검토

■ 보험회사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보험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상 의뢰인의 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됨.

-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아닌 “의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업무를 의뢰받아 재위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해석됨.
  - 따라서 보험회사가 제3자로부터 의뢰받은 업무가 아니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신용정보를 수집·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 제4항 제2호<sup>47)</sup>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면제됨.

■ 온라인 보험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절차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보험회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수탁자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손해발생 시 수탁자를 소속직원으로 간주하고, 개인정보의 위탁내역을 주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의 고지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문서에 의한 위탁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업무 처리절차도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sup>48)</sup>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됨.

47)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48)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pp.52~55.

- 오프라인 보험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절차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됨.
  -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 위탁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함.
  
- 각 법이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처리” 내지 “취급”의 행위태양이 다르고, 그 위탁 절차 등도 다소 상이하어 그 해석 및 적용이 매우 혼란스러우므로 입법에 의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 처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 처리”,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취급”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차이가 있음.
    -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 처리” :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신용정보법 제2조 제13호)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 행위(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1항)

〈표 Ⅲ-11〉 개인정보법률상 “위탁” 관련 규정

구분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사전 동의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위탁: 의뢰인의 동의·고지(§17①)	-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이용자의 동의·고지(§25①)	-	- 개인 신용 정보 수집·조사의 위탁: 신용정보법 제 17조 적용
예외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동의(고지) 면제(§17②, §32④ ii)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 경우: 고지·동의 면제(§25②)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함.(§26①) a.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b.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관련 사항	- 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적용
공시	-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영§27②)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27의2) - 개인정보 이용내역(위탁 포함)의 주기적 통지(§30의2)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30① iv)  -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26②)	
의무	위탁자와 수탁자의 연대 손해배상책임(§43④)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25④) -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탁자를 소속 직원으로 봄(§25⑤)	- 수탁자 교육, 안전성 감독 등(§26④) -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수탁자를 소속 직원으로 봄(§26⑥)	
기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시, 관리·감독의무 및 소속직원 간주(§50의3)	재화·서비스 홍보나 판매 권유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영§28)	

○ 위와 같이 신용정보법상의 “처리”에 관한 행위태양과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리”행위 태양이 상이하므로, 신용정보법상의 “처리”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보통신망법상의 “취급”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함.

- 또한 신용정보법상의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신용정보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절차(위탁업무 수행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에 의한 위탁, 수탁자 등 공개, 홍보 내지 판매권유를 업무로 하는 위탁 시 고지 등) 규정들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자. 보험개인정보의 파기

### 1) 개인정보법을 규정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여야 하고(제18조 제2항),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1조).
- 여기서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불이익 정보)는 아래와 같음(시행령 제15조 제4항).
  - 연체, 부도, 대위변제 및 대지급과 관련된 정보
  -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정보
  - 법원의 파산신고·면책·복권 결정 및 회생·개인회생의 결정과 관련된 정보
  - 체납 관련 정보
  - 신용정보 중 체납 관련 정보
  - 그 밖에 위 정보와 유사한 형태의 불이익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정보(채무재조정 약정정보, 신용회복지원 확정정보)
- 신용정보의 활용기간 및 보존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고, 신용정보의 삭제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함(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 정보통신망법은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9조 제1항).

○ 정보통신망법상의 파기사유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사업을 폐업한 경우 등임.(제29조 제1항) 이 이외에도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제30조 제3항).

○ 또한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제29조 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정기간이란 통상적으로는 3년을 말하지만,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되고,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는 달리 정한 기간이 해당 기간이 됨(시행령 제16조 제1항).

－ 한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상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시행령 제16조 제4항).

■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1조).

- 신용정보법 제20조 제2항<sup>49)</sup>,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sup>50)</sup>, 상법 제33조<sup>51)</sup>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보존기한이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sup>52)</sup>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제21조 제1항 단서)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여야 함.

■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에 대하여는 신용정보법 제18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함.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여야 함.
- 법령상 보존기한이 명시된 경우(신용정보법 제18조, 제21조 사유 등) : 보존기한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49)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0) 제42조의3(적합성 원칙의 확인 내용 등) ③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확인받은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1)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p.82.

- 법령상 보존기한이 불분명하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당초 정보주체가 동의한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하여야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초 보유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법령상 보존기한이 불분명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는 경우 : 당초 보유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 계약 완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법령상 잔여 보유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집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향후 분쟁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 당국의 검사·수감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고 상품 소개 등 다른 업무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 2) 적용기준 검토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파기에 관한 일반 규정이 없어,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이외의 정보나 폐업 이외의 경우에 관하여 보존 및 파기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 열거된 파기사유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재된 파기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정보통신망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도 그 파기사유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보존 내지 파기 기준은 각자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서 자유롭게 정하도록 맡기고 있어 정보 보관자마다 그 파기기준이 제 각각인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하위 규정 등에서 보험개인정보의 종류, 수집 목적, 보관 필요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보존 및 파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표 Ⅲ-12〉 개인정보법률상 “파기” 관련 규정

구분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즉시 파기	- 폐업 시 :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입회하에 처분·폐기(§21)	- 지체없이 파기 (§29①) a.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b.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c. 사업을 폐업한 경우 d. 이용자의 동의 철회(§30③)	- 지체없이 파기: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21①)	-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 법령상 보존기한 명시: 기한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법령상 보존기한이 불분명하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초 정보주체가 동의한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기간 미지정 시 당초 보유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 법령상 보존기한이 불분명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는 경우: 당초 보유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일정 기간 후 파기	- 불이익정보: 3~5년 내 폐기(§18②) a. 연체, 부도 등 관련 정보 b.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정보 c. 법원의 파산선고 등 관련 정보 d. 채납 관련 정보 e. 채무재조정 약정 정보 f. 신용회복지원 확정 정보	- 3년 이상(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 제외)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경과 후 즉시 파기 또는 분리 보관(§29②) · 기간만료 30일전까지 개인정보항목, 만료일, 파기 사실 등 통지(영§16④)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21①(但)) ·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 계약 완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나 법령상 잔여 보유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수집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향후 분쟁 대응·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 3.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및 운영상 문제점

#### 가. 적용 법률의 불명확 및 중첩 적용

##### 1) 동일 보험거래에 대해 다수의 적용 법률 존재

##### 가) 보험정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용정보법 적용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는 주로 신용정보의 집중·활용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보험정보 또한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에 포함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인정보에 대해 신용정보법을 적용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닌 개인금융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이 없었으므로, 금융 및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이들 정보를 규율하는 법으로 신용정보법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기본적으로 신용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서 보험제도의 운영과는 기본목적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보험개인정보가 신용정보에 포섭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함.

##### 나) 온라인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보충적용

■ 보험회사가 정보통신망 등 온라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용정보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설서 등을 통해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라도 보험계약의 체결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온라인계약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

–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온라인을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뿐 아니라 여행업, 호텔업,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닌 사업자 중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사업자, 즉 소위 ‘준용사업자’에 대해서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온라인·오프라인의 대부분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었음.

○ 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막을 수 없어, 중간에서 보험회사는 혼란만 더욱 가중되는 실정임.

■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이용의 보편화 및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호소력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임.

○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이 사업운영 시 온라인적 방법과 오프라인적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평균 72.7%에 달하고 있어 온라인적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 또한 기업들이 사업운영 시 온라인적 방법과 오프라인적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온라인 고객용 DB와 오프라인 고객용 DB를 따로따로 법적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두 DB를 따로따로 관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sup>53)</sup>

53) 김경환b(2014), p. 31.

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도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영업형태에 따라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었음.
- 이에 더하여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보충적용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대되어 그 중첩성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평가됨.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다소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전부 적용 배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임.

라) 보험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다기화

- 이에 따라 현행 법 체계하에서는 보험회사가 동일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거래경로나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법률이 적용됨.
  - 최우선 적용 법률인 보험업법을 제외하더라도, i)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고, ii) 오프라인으로 수집한 정보 중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며, iii) 온라인으로 수집한 보험정보에는 신용정보법 외에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sup>54)</sup>, 이에 더하여 iv) 거래경로를 불문하고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됨.

- 그런데 실무상 같은 고객과 같은 보험거래를 하면서 그 수집경로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수집하는 정보가 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모두 달리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며, 무엇보다 이러한 경우마다 규율을 달리 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음.<sup>55)</sup>

## 2) 개인정보법을 간 정합성 부재로 인한 혼란 존재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법의 제정이라는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현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일반법과 개별법 간의 규율범위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개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어(준기본법의 형태) 기본적으로 일반법과 개별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다시 말하면,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이전에 개별법에 해당하는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시에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갖추기 위한 정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개별법의 조항 중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 또는 삭제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도, 개인정

54) 일정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도 중복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됨.

55) 박재현(2014), p.8.

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된 현재까지도 그러한 입법적 정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개별법보다 늦게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통상적인 일반법과 개별법 간의 규율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강하고 세밀하게 규율되고 있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킨 요인 중의 하나라는 의견이 있음.<sup>56)</sup>

– 그에 의하면, 일반법에 따라 기본적인 규율범위가 정해지고, 각 영역별로 일반법의 규율보다 더 강하게 또는 약하게 규율할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개별법에서 그에 맞게 규율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관한 전체적인 규제를 빠짐없이 포섭하려다 보니 종래의 개별법에서 규율하는 수준보다 대체적으로 더 강하게 규율하거나, 또는 종래 개별법에서는 없던 규제가 새로 포함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생기게 되었다는 것임.

### 3)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충적용 기준 미비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앞서서도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규정은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적용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양자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임.

56) 박재현(2014), p. 8.

■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은 일응 일반법과 특별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간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률들에 있어서는 법률별 특성 차이나 산업별 규제목적 차이를 간과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불명확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의 도모가,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의 촉진이 주된 목적인 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보호<sup>57)</sup>가 주된 목적인 바, 각 법률들은 각각 제정취지가 상이하여 규제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제정 취지를 간과하고 각 특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무조건적으로 보충적용토록 함에 따라 산업별 특성을 무시하고 회사나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하여 <표 Ⅲ-13>에서는 보충적용원칙의 불합리한 사례를 실제 보험회사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논의해 보고자 함.<sup>58)</sup>

- 개인정보 수집 시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수령과 더불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이 통지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차이가 있음.
- A생명보험회사는 인터넷 보험계약거래를 함에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3가지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2011년 안행부는 A생보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제15조 제2항 제4호 누락)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였음.
-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임.

57)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초에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 제정 목적 중 이용 부분을 삭제하고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

58) 본 사례는 연구자들이 2013년 11월 보험회사 방문면담을 통해 보험회사 실무자들로부터 수집한 내용임.

〈표 Ⅲ-13〉 개인정보법률상 개인정보 수집 시 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관련 규정 없음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한편,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나,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 및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 간 유사규정의 최대공약수만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동 가이드라인 역시 타 법률에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무조건적인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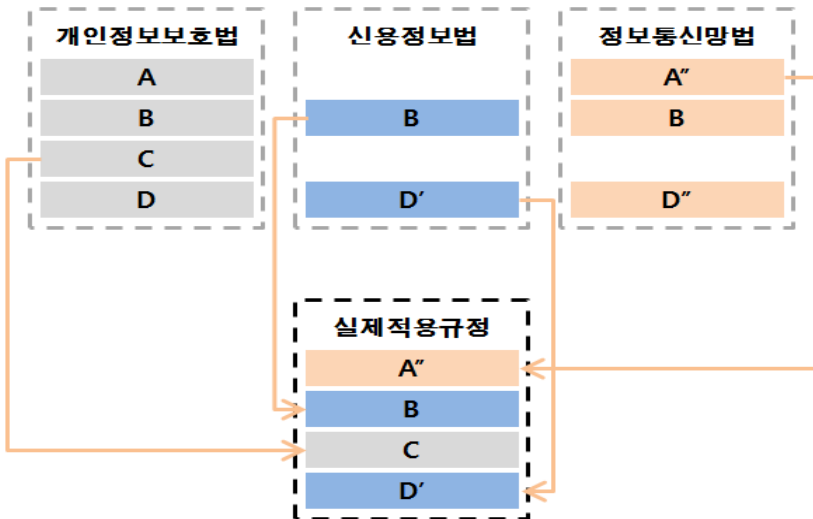
#### 4) 개인정보법률 간 실제 적용 규정의 복잡성: 모자이크법

■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체계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것 중의 하나는 다수의 관련 법률들이 짜깁기되어 모자이크법의 형태로 적용된다는 것임.

○ 이로 인하여 적용 법률 간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보험소비자는 물론이고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담당직원들조차 정확한 관련 적용 규정을 자신할 수 없게 되기도 함.

- 따라서 중국에는 모든 실무자들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개인정보법률 중 가장 강한 규제를 모두 선택하여 적용하게 되는 모순을 유도하게 됨.
- 모자이크법의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Ⅲ-2>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그 제정취지에 따라 그 규정 내용이 다소 상이하며,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가장 폭 넓고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일반법으로서 신용정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담당함.
  - 이에 더불어 이들 법률 간 적용순위는, 온라인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신용정보법이 먼저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순서로 보충적용이되므로, 최종적으로 실제 적용되는 규정은 그림 하단과 같이 3가지의 법률이 짜집기되어 이루어진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임.

<그림 Ⅲ-1> 법률 적용의 불명확성: 모자이크법



### 5) 적용 법률의 다기화에 따른 중복규제

-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의 취지가 상이한 다수의 법률이 보험개인정보에 중첩적으로 적용된 결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게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선임 등 여러 부문에서 중복되는 규제가 반복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남.
  -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활용체계를 공시하였음에도 유사한 내용의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개인정보취급방침(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공시하도록 한 것이나,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보호·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보호법)나 개인정보관리책임자(정보통신망법)를 또 다시 선임토록 하고 있는 것 등은 사회적 비용만 증대시키는 불필요한 규제의 중복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들은 명칭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의 경우에는 공개대상도 차이를 보이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는 자격요건도 상이하여 일관적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음.
  - 개인정보와 관련한 제재 규정의 내용 또한 상충되어 형평성의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과징금과 형벌을 부과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및 벌칙 조항이 없으나, 정보통신망법은 과징금 1억 원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은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신용정보활용체계를 동시에 공시할 경우, 비슷한 공시가 같이 있으므로 해서 왜 두 공시가 존재하는 것인지, 소비자가 봐야할 공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혼란만을 초래할 뿐 실제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개인정보법제상의 중복규제는 법의 실효성을 낮추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규제체계를 갖고 있어 개인정보법 중 가장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은 규제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sup>59)</sup>로 하고, 보호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터넷의 보급과 이용이 보편화된 요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실상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와 대부분 중첩되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되고 있어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별 역할과 권한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험회사나 보험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결정기능, 집행기능, 분쟁조정기능, 감독기능 등이 여러 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업무상 중복을 초래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 각부에서는 다른 부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

– 보험회사의 경우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간에 법률 적용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각각 임점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규제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

59)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함(법 제2조 제1항 제3호).

- 보험소비자는 또한 분쟁조정기관의 다기화 등으로 인하여 피해구제의 절차에 관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이 다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소관부처도 다기화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각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침해가 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안정행정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중 어느 기관에 침해신고를 해야할지 고민해야 될 수도 있음.
  - 더불어 분쟁이 조정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분쟁조정기관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분리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음. 조정기관별로 조정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임.

## 나. 정보주체의 보호 미약

### 1)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무단 제공 관행

- 최근의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문제점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금융기관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임.
  - 금융위원회(2014.3.10)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이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적게는 20여 개에서 많게는 50여 개까지, 수집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렇듯 불필요하게 과다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불법 이용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실정임.
  -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신용정보법에 의한 개별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금융위원회의 승인범위를 초과하여 보험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집중적인 비난과 우려를 받았음.

- 2002년12월 금융감독위원회(현재의 금융위원회)는 생·손보협회에 대해 보험정보 25개 항목을 집중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으나<sup>60)</sup>, 2012년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생보협회는 188개 항목(125개 항목<sup>61)</sup> 초과, 손보협회는 27개 항목(10개 항목 초과)을 집중관리·활용한 사실이 확인됨.

■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경우 주로 아웃바운드 마케팅이나 푸시 마케팅에 의존하는 바, 정상적인 보험거래 과정 이외에 마케팅이나 업무제휴 또는 대리점 등록과정에서 다소 불법적 소지가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개인정보들이 텔레마케팅 등에 무분별하게 이용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험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보험설계사 등 보험모집종사자가 소비자에게 일대일로 접근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이 행해지게 되는 바, 이러한 마케팅 과정에서 보험모집종사자들은 보험계약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건강정보 등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획득하게 됨.
- 또한 보험회사가 대량의 개인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i) 카드사, 백화점, 홈쇼핑 업체, 인터넷 포털 등과 업무제휴를 맺어 해당 업체가 보유한 또는 향후 보유할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넘겨받거나, ii) 인터넷 쇼핑몰과 TV홈쇼핑을 겸영하고 있는 통신판매 업체나 카드사 등을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시켜 해당 업체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sup>62)</sup>

60) 금융감독위원회, 시장 41254-102호, 2002.12.18.

61) 진단정보(기왕력, 혈압, 맥박 등 66개 항목), 계약인수 거절정보(인수거절사유, 부담부위 등 9개 항목), 보험금지급 관련 병원·의사정보 5개 항목 등

62)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7), pp. 7~12.

■ 또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2개 생명보험회사 및 11개 손해보험회사 등에 대해 “보험계약정보 이용·관리실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개인정보 제공·조회 시의 동의 수령 및 확인업무가 불철저한 것으로 나타남.<sup>63)</sup>

- (개인신용정보 무동의 조회) 생·손보사 및 손해사정법인 직원들이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 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함(생보사 4,696건, 손보사 3,568건).
- (개인신용정보 조회 관련 점검 의무 미이행) 4개 손보사는 소속 직원 등이 조회한 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재를 받았으며, 생명보험의 경우는 조회기록 관리 및 적정성 점검 의무가 생보협회에 부여되어 있어 생보협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 (검사자료 허위 제출에 의한 검사업무 방해) A손보 및 A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의 검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밝혀짐.
-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업무 불철저 등) 보험협회의 경우 보험회사에 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의 조회동의 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 점검을 하지 않았고, 내부 직원이 신원 확인 없이 외부 의뢰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았으며, 정보조회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음.

## 2) 사전동의제도의 남용 가능성

■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정보법률들은 사전동의제도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

63) 금융감독원(2012) 참조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으면 보호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상 사전동의의 수령절차가 적절하게 행해지지 않는 등 사전동의 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가능성이 상존함.

○ 현행 사전동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가 사전동의를 일부라도 거절할 경우에는 주된 거래를 전혀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실제적으로 사전동의를 불가피하게 강요당한다는 것임.

○ 또한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동의규정이 불명확·광범위하여(포괄적 동의 수령) 오·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함.

–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목적도 불분명한 “포괄적 동의” 등으로 인해 본인이 잘 모르는 수백개의 제휴사 등(제3자)에 신상정보가 제공되어 스팸광고에의 노출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출시 피해규모의 예상도 어려움.

○ 이렇듯 불가피하게 또는 포괄적 동의 등에 의해 얻어진 사전동의를 ‘정보 활용의 면죄부’처럼 활용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임.

### 3) 실질적인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미흡

■ 자기정보통제권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파악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sup>64)</sup>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 바,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멸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할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임.

64) 권건보(2005), p.94.

○ 자기정보통제권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수집통제권(수집동의권), 보유통제권(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삭제·차단청구권) 및 이용·제공통제권(중단청구권, 추가적 동의권) 등으로 구분됨.<sup>65)</sup>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상으로는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으나, 수집동의권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수집동의권 조차도, 전술한 바와 같이, 정보의 과도한 수집 및 포괄적 동의의 강요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본인의 정보 이용·제공 상황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렵고, 설혹 안다고 하더라도 정보보호를 요청할 규정 및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임.

■ 그나마 보험권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Do Not Call”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는 있으나,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정보’에 대하여 한정적으로만 실시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보험개발원은 자사가 보유한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본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2013년 4월부터 “보험정보고객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민원을 우선으로 일괄 접수·처리하였으며, 2013년 10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수·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65) 권건보(2005), pp.116~122 참조

#### 4) 수집동의 수령 여부 및 절차의 불합리성

■ 현재 보험정보를 포함한 모든 신용정보의 경우 실무상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수령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의 수령의 법적 근거 및 그 실효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제15조 제1항 제1호)하고 있는 반면, 신용정보법은 질병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시 동의 수령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신용정보나 금융거래정보의 경우에는 반드시 익명성을 필요로 하고 있어 신용거래 시 개인정보의 수집동의를 추가적으로 수령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집동의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신용정보의 수집 시 수집동의를 수령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이후에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신용정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동의를 수령하도록 함에 따라 신용거래를 복잡하게 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sup>6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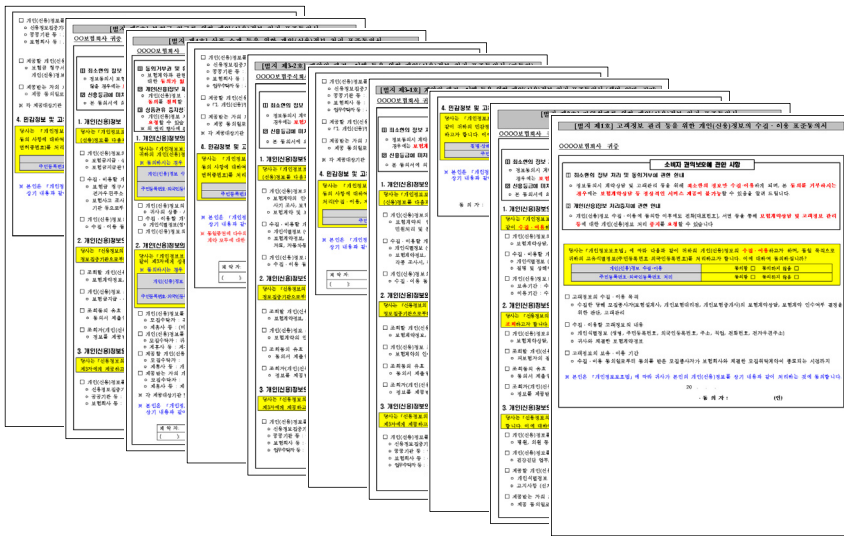
■ 최근의 금융소비자 보호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동의 항목의 과다 및 동의 절차의 복잡화 등에 따른 설명 미흡과 생략으로 오히려 고객의 권익보호 기회가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보험모집종사자는 보험가입 과정상 보험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로부터 총 10페이지에 걸친 동의서 양식에 따라 최대 28개 항목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 있음.

66) 물론 신용정보의 경우도 선택정보의 수집 시에는 동의수령의 필요성이 존재함.

- 보험소비자는 동의 내용이 너무 많아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모집종사자가 짚어주는 서류에 동의체크와 자필서명을 하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 효과도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자필서명만 받아가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발생 하는 실정임.

〈그림 Ⅲ-2〉 보험분야 표준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



다. 보험산업의 특성 미반영

1) 엄격한 동의주의 적용 시 정보공유를 통한 보험제도운영에 차질

■ 금융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적 거래에서는 계약당사자가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되지만, 보험의 경우는 정보주체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공동피보험자, 보험수익자, 피해자 등)가 다수 존재하게 됨.

- 피보험자가 여럿 있고(공동피보험자) 그 중의 한 명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등에서처럼 보험금을 수령하

는 자(생명보험의 경우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제3자(피해자)인 경우 등임.

■ 이러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정보주체와 직접 대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동의 수령이 용이하지 않음.

○ 최근에는 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송금하거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동의 수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의 공유 시 사전동의를 엄격히 요구할 경우 보험회사 간 정보공유가 불가피한 보험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보험정보의 수집 및 제공이 극히 제한되어 보험산업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함.

○ 더불어, 보험회사 자체 내의 경우도 보험계약정보나 보험금 지급정보의 이해당사자(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상속인 등) 간 제공에 대하여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활용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계약 및 사고정보는 집적 및 활용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수의 법칙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 할인·할증제도, 보험사기 방지 등에 필요한 정보 누락이 발생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을 차단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

○ 보험요율 산출 및 할인할증제도의 운영 곤란

－ 보험계약자가 계약자료에는 동의하였으나 피해자 등의 사고자료 미동의 시 보험금 과소계상으로 산출요율의 정확성이 결여됨.

－ 보험계약 및 사고자료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계약자의 개별적요율(할인·할증률 포함)의 제시가 곤란하며,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

로 경감을 목적으로 사고사실 은폐 등 개인정보의 조작제공 가능성으로 도덕적 위험의 발생이 증가함.

- 사고자료의 활용동의가 없는 경우와 무사고를 구분할 수 없어 적용요율 산출의 오류 발생 및 무사고 가입자의 부담이 증대됨.
-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과거 사고유무 등 보험이력을 개별요청하거나 직접 확인하여야 함에 따라 사무처리시간 지연 및 민원폭증 등으로 정상적인 위험보장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사무처리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보험료에 전가되어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므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함.

○ 중복보험의 예방을 통한 실손보상원칙 구현 곤란

- 중복보험(double insurance)이란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보험사고에 공통된 보험기간에 대해서 수인의 보험자와 개별로, 동시에 또는 순차로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한 경우에 그 보험금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함.
- 이러한 중복보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 및 사고정보의 집중을 통하여 동일한 보험인지의 여부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한 바, 중복보험의 확인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할 경우 동의를 수령하지 못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초과보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보험금 중복 지급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의 도박화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의 기본원칙인 실손보상의 원칙을 훼손시키게 되며, 그 피해는 보험회사는 물론이고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됨.

○ 보험사기 방지업무의 위축 또는 실효성 결여

- 보험사기는 보험의 부정적인 특성인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표면화되는 현상으로 보험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효율

성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로서, 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그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

- <표 Ⅲ-14>에서 보듯이,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 원 (77,11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보험사기는 보험과 공제는 물론이고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조사 및 적발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와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임.
- 현재 보험사기 관련정보는 일부 보험종목별 사고정보를 제외하고는 보험권 내에서도 통합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공제의 경우는 각 회사별로 별도로 집적되어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제상 보험정보와 공제정보 간 상호교류가 곤란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따라 실무상의 접근도 어렵기 때문임.
-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 다수보험계약에 의한 고액 보험금 청구와 위장사고, 기왕증 불고지 등임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의 동의를 거부하면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여 보험사기업무의 위축 또는 실효성의 결여가 우려됨.

<표 Ⅲ-14> 최근 3개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11년	'12년	'13년	증감률
적발 금액	생명보험	64,958	63,403	74,347	17.3
	보장성	62,905	58,386	73,106	25.2
	손해보험	358,695	389,931	444,613	14.0
	자동차	240,835	273,755	282,140	3.1
	장기손보	102,893	103,534	145,090	40.1
	계	423,653	453,335	518,960	14.5
적발 인원	생명보험	4,266	4,900	4,128	△15.8
	보장성	4,152	4,757	4,047	△14.9
	손해보험	68,067	78,281	72,984	△6.8
	자동차	54,144	60,821	56,617	△6.9
	장기손보	13,584	16,414	15,549	△5.3
	계	72,333	83,181	77,112	△7.3

자료: 금융감독원(2014), p.2.

## 2) 언더라이팅에의 보험개인정보 활용 제한

- 보험은 위험단체의 구성을 전제로 함. 따라서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1인 간에 체결되지만, 보험은 위험단체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체결되고 해석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을 파악·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언더라이팅(underwriting)이라고 함.
  - 이러한 언더라이팅은 보험계약자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됨.
  
- 보험회사는 적절한 언더라이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소득 정보, 건강 및 의료정보, 신용정보 등이 필요하며, 특히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거절자 명단(보험가입 부적격자 등), 보험인수유이자 명단(다수 보험금 지급대상자 등)의 공유가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일반 정서상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소득정보 등 신용정보의 경우 보험사기의 발생률과 상관관계가 인정<sup>67)</sup>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에 대해 문의하거나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함.
  - 건강 및 의료정보의 경우 「의료법」 제21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 되지만, 가족이나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보험회사가 보험청약자의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약자 등의 동의를 얻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기록을 열람하고자

67) 박준국(2006), pp.26~38. 참조

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의 내부지침에 따라 열람이 거부당했던 경험이 있음.

-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이나, 보험청약 거절자 명단, 보험인수 유의자 명단의 경우에도 보험범죄의 예방이나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활용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용이 곤란함.

---

## IV. 제 외국의 입법례 및 활용실태

---

### 1.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률 체계

#### 가. 미국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체계는 분야별 보호법제의 형식을 지니고 있음.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역에서 각각 별도로 정보를 보호하며, 특정 유형의 정보조사 및 사용기관을 규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연방이나 주 차원에서 제정되고 있음.<sup>68)</sup>
    - 공공부문은 “연방프라이버시법(Privacy Act of 1974)”이 기본법의 역할을 함.
    - 민간부분은 금융, 전자통신, 의료정보 등 각 분야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해당 사안에 맞는 개별법 제정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함.
  - 이러한 법체계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비일관적이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혁신과 경쟁이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비용 부담의 증가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장점도 지니고 있음.<sup>69)</sup>
  - 현재 미국의 법률체계를 보면 규제는 정부의 입법, 집행, 평가에 기반을 두되, 그 기능은 민간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평가받고 있음.

---

68) Henry H. Perrit Jr.(1996), p.88.

69) Options for Promoting Privacy on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Draft for Public Comment, <http://aspe.hhs.gov/datacncl/privacy/promotingprivacy.shtml>)

〈표 IV-1〉 미국의 개인정보법률 체계

보호대상	주요법률
공공부문	- Privacy Act of 1974
	- Freedom of Information Act, 1974
	- Computer Matching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1988
	- E-government Act of 2002
금융부문	- Gramm-Leach-Bliley Act(1999)
	-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
	- Identity Theft Red Flags and Address Discrepancies Under the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 of 2003; Final Rule
통신부문	- Cable Communication Policy Act(1984)
	- Electronic Communication Privacy Act(1986)
	-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1994)
	- Telecommunication Act(1996) - Telephone Records and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6
의료정보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3
전자서명	- 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of 2000
기반시설 보호	- Computer Fraud and Abuse Act(186)
	- Former Vice President Protection Act of 2008
기타	- Driver's Privacy Protection Act, 1994
	-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of 2003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9), p. 28~29.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률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보다는 활용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개별 법률들은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삭제의 과정에서 일관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는 않음.
- 단, 개인정보 활용에 관해서 정보사용자, 활용하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 정보 활용이 허용되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정보 활용을 금하는 형태의 규제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나. 유럽

- 유럽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률은 유럽연합(EU)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영향을 받음.
  - 현재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 입법 근거인 규범은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8조, 유럽연합조약(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제6조 및 제39조 등임.<sup>70)</sup>
  -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률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보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사용자, 활용 가능한 정보 유형, 정보 활용이 허용되는 상황을 정해놓고 있음.
  
- 유럽연합의 기본 법률들의 하위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 지침과 규칙, 결정 등이 채택되어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개인보호지침」(Directive 95/46/EC), 「공동체 조직 및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처리와 그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된 개인의 보호에 관한 규칙」(Regulation (EC) No. 45/2001) 등이 있음.
  - 최근 2012년 1월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개인의 보호 및 동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규칙」과 「범죄의 예방, 조사, 수사 혹은 소추의 목적 또는 형벌 집행의 목적을 위한 있는 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처리 및 그러한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 관한 지침」이 발표됨.<sup>71)</sup>
  
- 유럽연합에서는 금융 및 보험 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법률과 규칙들이 금융 및 보험 산업에 적용되고 있음.

70)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9), pp.53-54.

71) 동 규칙안은 최종적으로 2014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를 일관적으로 총괄하는 일반법이 존재하며, 이 일반법들이 금융 및 보험 산업에 적용되고 있음.

○ 영국에서는 「데이터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이며, 이는 1995년 유럽공동체(EC)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개정된 법임.<sup>72)</sup>

– 그 외의 부문(정보공개, 전자통신 분야, 신용정보, 형사기록, 의료정보 등)에서는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따라 각각 개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처리법”이라 함)」이 1978년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률이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음.<sup>73)</sup>

– 정보처리법은 공정하고 적법한 수집·처리, 수집 목적의 특징, 정보의 정확성·안전성, 민감 정보의 수집 제한, 처리에 대한 본인 동의, 안전 보호 관리 의무, 본인 접근권 등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됨.

○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공공부문과 개별부문을 동시에 규율하는 일반법인 연방 개인정보보호법과 개별법의 역할을 하는 개인정보 관련 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음.<sup>74)</sup>

○ 스웨덴 역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일반법인 1998년 「개인정보법(Personuppgiftslag; Personal Data Act)」이 존재함.<sup>75)</sup>

– 그러나 동법을 대신하거나 동법과 함께 특정 활동에 있어 개인정보처리에 적용되는 특수한 법률과 규칙이 존재함.<sup>76)</sup>

72) 생명보험협회(2004), 영국편 p.14-1.

73) 생명보험협회(2004), 프랑스편 pp.14-1~14-3.

74) 양용석(2010), p.20.

75)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2), p.91.

76) 1973년 신용정보법(Kreditupplysningslag; the Credit Information Act, SFS 1976:1173), 1974년 채권회수법(Inkassolag; the Debt Recovery Act, SFS 1974:182), 1998년 건강관리

- 스웨덴은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통합형 입법주의인 동시에 수많은 영역별 개별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구축하고 있음.

#### 다. 일본

- 일본은 1988년 공공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민간부분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았음.
  - 민간부문에서는 할부판매법(1961년 법률 제159호), 대금업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1983년 법률 제23호) 등 부분 영역에서의 개별법이 존재하였고, 그 외의 민간부분은 정부 지침이나 민간 자율단체의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법률의 역할을 대신함.
  
- 그러나 2003년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정비를 통하여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 적용되는 5개의 법률을 공포하고 2005년 4월 이를 전면 시행함.<sup>77)</sup>
  - 5개의 법률 중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 적용되는 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는 민간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음.
  - 나머지 4개의 법률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개인정보심사회 설치법」,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로 모두 공공부분에 적용되는 법률임.

등록법(The Health Care Register Act of 1998, SFS 1998:622) 등

77) 김상미(2012), pp.32~34.

## 2. 보험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가. 각국의 보험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관한 법률

#### 1) 미국

- 보험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이 적용되고 있음.
  - 금융서비스현대화법(GLB법), 공정신용보고법(FCRA), 의료보험의 상호운용성과 설명책임 관한 법률(HIPPA),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 표준모델법(NAIC 표준모델법), 전미보험입법자협의회의 금융정보프라이버시보호모델법(NCOIL 모델법) 등이 그것임.
- GLB법(Gramm-Leach-Bliley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은 연방법으로서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금융기관과 개인의 거래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방침의 고지(disclosure of privacy policy), 공개 여부 결정 권한 및 설명(opt-out),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duty not to disclose), 계좌정보의 보호(protest account access information), 안전기준의 제정(safeguard standard) 등임.<sup>78)</sup>
  - 특히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non-affiliated third party)에 대한 고객정보 제공은 고객의 사전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불가능함.
    - 보험회사가 비공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privacy notice와 opt-out 제도로 보호할 수 있으나 보험요율산출기관 및 보험보증기금, 주보험감독청 등에의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음.<sup>79)</sup>

78) 김성태(2007), pp.93-95.

- FCRA(Fair Credit Reporting Act)는 금융기관이 소비자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 및 신용평점 이용 시 발생하는 소비자신용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sup>80)</sup>
  - 이 법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신용 정보는 그 유지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매년 1회씩 신용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비자신용정보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음.<sup>81)</sup>
  
- GLB Act와 FCRA는 모두 opt-out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항목에 따라 두 법의 opt-out 권리 행사에는 차이가 있음.<sup>82)</sup>
  - 예를 들면, 개인정보 중에 개인거래내역 항목에 대하여 FCRA가 이 정보들을 제3자 및 관련기관과 공유하는 것을 개인이 막을 수 없으나 GLB Act는 이 정보들에 대하여 제3자 제공 및 판매를 opt-out 권리를 이용하여 막을 수 있음.
  
- HIPP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는 미국의 연방보건성이 1996년 발표한 연방규정의 지침서 및 국가표준 법안으로 건강보험의 컴퓨터 연결과 관련된 보험정보의 집중과 활용을 규제함.<sup>83)</sup>
  - 의료기관 종사자, 데이터 취급자, 보험사업자는 환자에게 정보의 사용 및 공개 방법을 공지해야 하며, 환자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 환자가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한 환자 이외의 자는 법집행 시, 법원의 명령 등 사업 또는 행정절차 집행 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때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음.<sup>84)</sup>

79) 한국개발연구원(2013), p.4.

80) 이상경(2012), pp.202~203.

81) 동법은 2008년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공정·정확한 신용거래법(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of 2003, FACTA)의 제정으로 그 실효성을 유지하게 됨.

82) Privacy Rights Clearinghouse(2001), "Fact Sheet 24a: Financial privacy: How to Read Your "opt-out" Notices", <https://www.privacyrights.org/financial-privacy-how-read-your-opt-out-notice>.

83) 김성태(2007), p.91.

■ NAIC표준모델법(The NAIC Standard Insurance Information and Privacy Protection Model Act<sup>85)</sup>)은 보험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보험정보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됨.

○ NAIC표준모델법은 정보보호를 위해, 비공개(non-public) 개인정보를 개인 금융정보와 개인건강정보로 구분하여 제공요건을 달리 규정함.

– 개인금융정보(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는 opt-out제도로 운영하며 정보보호정책을 정보제공 이전과 연1회 정보주체에게 통지함(privacy notice).<sup>86)</sup>

– 개인건강정보(personal health information)는 opt-in제도로 운영함.

○ 개인금융정보와 개인건강정보 모두 opt-out제도 및 opt-in제도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을 규정함.

– 개인금융정보를 보험요율산출기관, 보증보험기금, 금융기관의 평가대행기관, 허가받은 기관의 산업표준규정 평가인, 기관의 변호사·회계사·감사, 주보험감독청 등에 제공하는 경우

– 개인건강정보는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질병·건강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며 보험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공 가능함. 즉, 손해사정, 보험사기조사, 언더라이팅(요율산출), 손해방지, 재보험, 리스크관리, 데이터베이스 보안, 합병, 감독당국의 승인 하에 추가된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에게 정보제공이 가능함.

84) 김선정(2003), p.37.

85) <http://www.naic.org/store/free/MDL-670.pdf>

86) privacy notice 제도는 정보 제공 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보호정책(정보 수집, 처리, 제공, 도호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제도임. opt-out제도는 원칙적으로는 정보제공이 가능하지만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정보제공 거부 의사 표시가 있을 때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이고, opt-in제도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정보제공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정보제공이 가능한 제도임.

- NCOIL모델법(Financial information Privacy Protection Model Act<sup>87)</sup>)은 NAIC에 비하여 보험사업자부담을 경감하고 GLB Act 제5장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조항의 주별 채택을 목적으로 전미보험입법자협의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Insurance Legislators, NCOIL)에 의해 공포됨.
  - 이 법은 개인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으면 마케팅 목적을 제외한 모든 사업적 목적을 위하여 개인의 건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험자가 오직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의 의료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opt-in 제도가 적용됨.
  - 소비자 정의에 보험의 수급자와 신청인을 포함한 NAIC모델법과 달리 보험계약자와 신청인만을 소비자 개념에 포함시킴.
    - 소비자 개념을 축소시킨 덕분에 보험자는 사업주가 가입한 건강 플랜에 포함된 수많은 종업원에게 일일이 보험자의 프라이버시방침과 정보공개 동의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되고 보험자는 요율산출기관에 종업원의 동의 없이 치료기록을 보낼 수 있음.

## 2) 유럽

- 유럽 각국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활용에 대하여 엄격한 동의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및 법적 문제와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88)</sup>
- EU의 개인정보의 자동처리에 관한 보호협정, EC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은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 개인의 동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스팸메일 발송 등에 대하여 opt-in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음.<sup>89)</sup>

87) [http://www.ncoil.org/other/financial\\_information\\_privacy\\_pr.htm](http://www.ncoil.org/other/financial_information_privacy_pr.htm)

88) 함인선(2012), pp.12~16.

89) 이은영(2008), p.28.

-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은 정보주체의 정보접근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에게 opt-in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바, 보험정보도 동 법률의 적용대상임.
  - 정보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가 중요한 사항이지만 동의수령이 절대적이지는 않으며 일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함.
    - Part IV. exemption에서는 관계법률에 의해 공개된 정보(제34조)를 정보공개 금지규정의 예외사항으로 규정함.
    - 법(Act) schedule 3의 3.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 경우를 명시함.<sup>90)</sup>
    - 보험정보처리의 경우, 법(Act) schedule 3의 paragraph 10에 의거해 제정된 The Data Protection(Processing of Sensitive Personal Data) Order 2000에서 예외를 규정함.<sup>91)</sup>
  - 이외에 금융 및 보험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별법률로는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2006), 의료기록 접근법(Access to Medical Report Act 1988) 등이 있으며, 이 법들 역시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opt-in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프랑스는 금융 및 보험 개인정보에 관련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고, 정보처리법이 모든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적용됨.<sup>92)</sup>
  - 프랑스는 보험사기방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등록, 범죄조사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등의 경우를 개인정보 집중에 대한 통지의무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데이터의 등록은 5년 이후 제거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주

90) 정보주체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vital interest)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수령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및 정보주체가 비합리적인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91) 보험사업을 운영할 목적에 필요한 경우 및 데이터처리인이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음.

92) 생명보험협회(2004), 프랑스편, pp.14-14~14-27.

체의 사전 동의가 없는 제3자 정보 제공은 불가능함.

○ 보험업의 경우 정보처리법 제17조에 근거한 「간략화 규범」의 제16호<sup>93)</sup>에서 개인데이터의 자동처리에 관하여 언급됨.

– 동 규정에 따라 데이터 처리는 계약 체결 및 관리<sup>94)</sup>, 계약 이행<sup>95)</sup>, 통계작성 및 시장 조사<sup>96)</sup>와 관련하여 열거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보험과 관련하여 처리대상이 되는 데이터는 정보처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전통지가 적용되는 한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보장의 합법성을 존중하며, 보장 관련 내용으로는 신원<sup>97)</sup>, 군 복무 상황<sup>98)</sup>, 경제·재무상황<sup>99)</sup>, 청약에 필요한 데이터<sup>100)</sup>, 가족상황<sup>101)</sup>, 교육<sup>102)</sup>, 여가<sup>103)</sup> 등이 있음.

93) 「간략화한 규범」의 제16호는 보험회사, capitalization회사, 재보험회사, 어시스턴트회사 및 이들 중개자에 의한 계약의 체결·관리·실행 시 개인데이터 자동처리에 관한 1981년 1월 20일자 의결 제81-004호임.

94) 리스크에 맞는 계약을 제안하기 위해 청약자(demandeur)별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 조사, 리스크의 검토(eamen)와 검사(contrôle), 요율설정(tarifcation), 보험증서와 계산 서류(documents comptables)의 발행, 보험료 또는 부금의 징수, 경우에 따라 공동보험 회사 간 배분, 중개자에 대한 위탁, 리스크 관리(surveillance) 및 필요한 기타 기술적 업무(opérations techniques)의 기능

95) 보상금(indemnités)과 급부금(prestations)의 결정 및 지급, 간사보험회사(apériteur)가 필요한 경우 공동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징수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업무, 계약에서 정하는 규정의 이행 및 구성권(recours)의 행사의 기능

96) 통계 작성(élaboration), 해당 회사의 자체 활동에 대해서만 관련성이 있는 시장조사 및 판매촉진사업(promotion) 실시를 목적으로 자사 고객으로부터 샘플을 추출(établissement de sélections), 현행 법령 및 행정규칙(dispositions légales, réglementaires et administratives)의 이행의 기능

97) identité: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장소, 국적

98) 군 복무 기간 중 일정 보장의 중단 또는 일정 보험료나 부금의 지급 중단을 초래한 경우

99) 직업상 특징, 연수, 일반경비, 은행 또는 우편예금 계좌 번호

100) 고객번호, 계약번호, 보험사고 관련 서류번호, 지불방법, 보험료·부금 및 부가보험료(accessories), 수수료, 세금, 채권(créances en cours), 모집인(apporeur)·공동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조회할 연락처, 보험금(sinistre)·보상금·연금(capitiaux rentes)·보험금(valeurs assurées)·보장금(garanties souscrites)의 성질, 리스크 경력(antécédents du risque) 및 중복보험(assurances cumulatives) 등

101) 혼인상황 및 부부재산제(régime matrimonial), 비속자, 존속자 및 피부양자

102) 현재의 교육 수준 및 내용

103) 운동·야외활동, 스포츠, 수렵, 오락

- 데이터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을 인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청약서(proposition) 또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수집된 데이터를 보존해서는 안 됨.
- 데이터의 제공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열거된 제공자만이 각각의 범위 내에서 각종 보장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처가 될 수 있음.<sup>104)</sup>

### 3) 일본

- 일본의 보험개인정보는 금융분야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취급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sup>105)</sup>
  - 금융 및 신용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규제 및 가이드라인 설정책임은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에 있음.
  - 금융분야의 개인정보 취득을 위해서는 개인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이용목적을 명시해야 함.<sup>106)</sup>

104) 계약체결, 관리 및 이행에 관한 담당 책임자(personnels chargés), 계약의 모집인(agent, 브로커 등) 및 그 직원,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인, 필요한 경우 사고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보충적 급부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필요한 경우 공동보험회사, 재보험회사, 계약의 관리 또는 사기 방지대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 필요한 경우 변호사, 전문가, 의사, 공증인, 보험금지급(réglement des sinistres)에 사회보장제도(régimes sociaux)가 연관된 경우 또는 해당 보험회사가 사회보장제도를 보충하는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사회보장금고(caisses de sécurité sociale), 필요한 경우 사고 가해자(responsable), 피해자 및 이들의 대리인, 필요한 경우 계약에 관련된 권리의 이전 또는 대위 수익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원, 보험감독관(direction des assurances), 국제국(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및 데이터 수령권한을 가진 모든 공적 부서, 회계감사 및 감사(audits)

105) 맹수석(2010), pp. 301~303.

106) 가이드라인은 예로서, 예금·여신판단 및 관리·보험금지급·제휴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와 권유·제휴사의 보험모집 등으로 이용목적은 구체화하고 있으며, 처리지침은 보험계약 청약 시 인수심사·부대서비스 제공·상품 및 서비스 안내,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고조사·보험금지급 등으로 규정

- 특정한 이용목적에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취득·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상 예외사유를 인정하고 있음.<sup>107)</sup>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동의가 필요함(금융개인정보의 경우는 제공대상, 제공목적 등을 명시).
  - 다만, i) 상기의 ‘이용목적 초과 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ii) 제공항목, 제공수단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보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조치할 경우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개인정보를 특정인과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자를 제3자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함(보호법 제23조 제4항 제3호 및 가이드라인 제13조 제6항).
  - 단, 이용취지, 데이터항목, 공동이용자 범위, 이용목적, 해당 정보의 관리·책임자이름 또는 명칭을 본인에게 통지하거나(opt-out과 무관) 본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태로 공표해야 함.
- 보험요율산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취득범위는 요율산출기관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취득이 모두 가능<sup>108)</sup>하기 때문에 특별법인 「보험요율산출기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취득이 모두 가능함.
  -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공지하면, 보험사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및 협동조합 등 간에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함.<sup>109)</sup>

107) ①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②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추진을 위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④ 국가기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에 정한 사무수행에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동의수령에 의해 해당 사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08) 지침 제4조

109) 지침 제5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특례에 관한 지침

- 보험업의 적절한 업무운영에 필요한 경우, 상속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 등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사무 등의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민감정보의 취득·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함.<sup>110)</sup>

#### ○ 보험협회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 생명보험협회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업무는 보험설계사의 교육·시험·등록, 생명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활동 등 열거된 업무에 한정되며, 민감정보 및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은 특례 근거가 없어 취급이 불가함.
- 손해보험협회의 개인정보 이용업무는 손해보험 대리점, 손해사정사, 감정인의 시험 및 연수, 손해보험 대리점 등의 종업원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적절한 감독에 공동이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의 부정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개인정보 공동이용제도 운영의 경우 등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민감정보 및 제3자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특례도 지침에 포함되어 있음.

#### 4) 미국과 유럽의 동의절차 비교

■ 미국과 유럽의 보험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률들 중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 미국과 영국의 동의절차는 크게 opt-in제도와 opt-out제도로 구분됨.

- opt-in은 고객동의 방식에서의 이용 허가이며, opt-out은 고객동의 방식에서의 이용 거부임.

#### ○ 미국의 경우 NAIC 표준모델법과 NCOIL 모델법에서는 각각 건강정보 활용 및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만 opt-in방식이 적용되고, 그 외의 정보들에 대해서는 opt-out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sup>111)</sup>

110) 지침 제6조 민감정보 취급특례에 관한 지침

111) Privacy Rights Clearinghouse(2001), Fact Sheet 24a: *Financial privacy: How to Read*

- 유럽의 경우에는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는 한도 내의 개인정보 이용과 기존고객에 대한 이메일 및 팩스를 이용한 영업에만 opt-out이 적용되고, 그 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opt-in 방식이 적용되고 있음.<sup>112)</sup>

〈표 IV-2〉 미국과 영국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시 동의 절차 비교

동의방식	미국	영국
opt-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정보의 활용</li> <li>·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감정보</li> <li>·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마케팅 (기존고객의 경우 제외)</li> </ul>
opt-o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기관과 제3자 간 금융거래정보 공유</li> <li>· 금융계열사 간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 오 정보 공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 합법적 이용(영업목적 포함)</li> <li>·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한 영업(기존고객)</li> </ul>
동의 불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금융기관과 마케팅 협약체결회사 간 금융거래 정보 공유</li> <li>· 금융계열사 간 신용정보 공유</li> <li>· 금융범죄의 예방 및 적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범죄의 예방 및 적발</li> <li>· 무보험 자동차의 방지</li> <li>· 도난 자동차의 수색 및 회수</li> </ul>

자료: 이은영(2008), p.28. 을 참조하여 보완함.

### 나.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소관부처

- 미국의 경우 개별법체계이며, 각 법률상 보험개인정보 보호 담당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 개인정보침해는 주로 개인정보주체들의 소송에 의하여 해결이 됨.
  - 민간부문에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기구이지만 연방거래위원회의 존재 목적이 자유롭고 공정한

Your "opt-out" Notices, <https://www.privacyrights.org/financial-privacy-how-read-your-opt-out-notice>.

112) 이은영(2008), p. 26.

거래의 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기관은 아님.<sup>113)</sup>

-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필요하며 현재의 연방거래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의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는 평가가 존재함.

■ 유럽의 경우 일반법이 존재하는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강력하고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기구가 존재함.

○ EU의 경우 EU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개인정보보호작업반(Working Part on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정보보호위원회(The Committee), 유럽이사회(The Council),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 등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직임.<sup>114)</sup>

- 이 조직들은 완전한 독립성을 지닐 것을 법적으로 요구받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위반의 통지, 시정 명령, 권리 구제 등의 다양한 역할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영국은 정보보호청(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sup>115)</sup>, 프랑스는 국가정보자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 CNIL), 스웨덴은 정보조사원(Datainspektionen; Data Inspection Board) 등 강력하고 독립된 개인정보보호 기관이 존재함.<sup>116)</sup>

- 이 기관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으며 개인정보보호법률 위반의 통지, 시정, 관련자료 제출은 물론 정보주체들의 피해구제 및 교육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13) 김재광(2005), p.142.

114) 생명보험협회(2007), EU편, p.1-1; 김재광(2005), pp.136~138.

115) 1984년 데이터보호법에 의하여 데이터보호등록청이었으나 이후 1998년 데이터보호청에서 2001년 정보보호청장으로 변모함.

116) 전은정·김학범·염홍열(2012), pp.61~62.

###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현황<sup>117)</sup>

- 보험개인정보의 활용은 주로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요율 산출을 목적으로 이용됨.
  - 미국의 경우 이러한 목적 외에 보험인수를 위한 심사나 보험회사의 부수적인 업무를 돕기 위하여 보험개인정보가 활용되기도 함.
- 각국의 보험개인정보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정보주체들의 정보를 집적한 보험회사들이 정보를 직접 활용하는 것은 물론 제3의 기관들이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가. 미국

##### 1) 의료정보국(Medical Information Bureau, MIB)<sup>118)</sup>

- MIB는 1902년 생명보험회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피보험자의 의료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정보교환 시스템임.
  - 계약자의 도덕적 위험방지, 보험사기 방지 및 정확한 언더라이팅을 위한 보험기록과 병력기록을 조회해 볼 수 있음.
  - 현재는 미국, 캐나다에 소재하는 470여 개의 보험회사가 가입하고 있으며, 주로 생명보험회사 및 건강보험 회사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음.<sup>119)</sup>
- MIB는 회원사를 통한 정보수집으로 거대한 개인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sup>120)</sup>

117) 본절의 내용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의 내부 출장조사자료를 주로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118) <http://www.mib.com/>

119) 유주선(2013), p.6.

120) 김성태(2007), pp.97~100.

- MIB가 가지고 있는 정보파일은 구체적으로 의료정보 코드 230종류(병명, 수술여부, 시기 등), 비의료정보 코드 5종류(무모한 운전경력, 위험한 스포츠, 항공기 조종 등), 개인식별정보(이름, 생년월일, 출신지, 직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MIB의 회원인 생보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시 생보사에 제출한 고지서나 진단서에서 얻은 피보험자의 정보들 중 언더라이팅 평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230여 개의 코드화된 정보를 MIB에 온라인으로 보고해야 함.
- MIB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회원사들에게 보험계약자들의 개인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생보사는 MIB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청약자의 고지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MIB에 추가 협조를 구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할 수 있음.
  - 보험사는 의사, 의료서비스 기관, 병원, 의료관련시설, 전문클리닉, 이전에 청약한 경험이 있는 보험사, 소비자신용조사기관, 자동차운전기록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를 MIB에 요청하는데 이 방식은 opt-in 방식임.
- MIB의 정보 수집 및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야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 활용 공지 및 정보 수정 요청권을 부여하고 있음.
- MIB는 보험사가 청약과정에서 청약자에게 MIB의 기능에 대해 서면으로 설명함.
  - 등록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MIB는 연 1회 무료로 소비자에게 기록을 공개함.
  - 공개되는 정보는 MIB의 자체 보유정보, MIB에 그 정보를 제공한 회원사명, 공개요구 전 12개월 이전에 당해 정보를 수취한 회원사 이름임.

- 모든 소비자는 보유정보의 내용을 알 권리, 부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정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수정요구권과 반론권 등을 공평하게 인정하며 공유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MIB에서의 개인정보취급의 법률적 근거는 공정신용보고법(FCRA)과 NAIC모델법임.<sup>121)</sup>

- 공정신용보고법(FCRA) 제604조는 소비자 정보교환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될 경우 소비자신용정보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y)이 보험가입 시 언더라이팅과 관련하여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비자의 신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NAIC모델법 제13조는 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및 공개조건에 대한 규정으로, 동 조는 생보사가 본인에 대해 보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동의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NAIC모델법은 1) 보험회사, 모집조직, 보험지원조직이 업무상 필요하거나 보험사기 의심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공시, 2) 보험계약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시, 3) 정부기관에 대한 공시 등의 유형에 대하여 예외규정에 의한 공시 유형으로 정해놓고 있음.

2) ISO(Insurance Service Office)<sup>122)</sup>

- ISO는 1971년 설립된 단체로 보험회사 등에게 데이터 제공, 데이터 분석, 이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업인 동시에 권고요율단체로서 통계데이터의 집적과 감독청 보고, 순손해보험요율의 권고, 표준보험약관 등을 판매하고 있음.

121) 송윤아(2012), pp.10~12.; 김성태(2007), p.91.

122) <http://www.iso.com/>

○ ISO가 제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분야는 보험사기 방지, 언더라이팅, 보험회사의 운영 지원 등의 세부 목적에 따라 데이터 및 통계/ 계리/ 표준약관 및 인수규정/ 컨설팅/ 보험금지급/ 특정리스크 정보제공/ 기술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ISO는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소비자들의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보험회사, 보험감독행정, 기타 많은 조직에 정보를 제공함.

○ ISO가 수집하는 정보는 보험회사가 수집한 상세한 수입보험료 및 지급보험금에 관한 정보로 이를 분석 및 가공하여 각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고객의 보험료와 보험금데이터를 집적하여 통계처리하고 각종 통계데이터를 감독자에게 보고함.

■ ISO의 클레임 서치는 보험사기 인지·방지 및 리스크 평가를 위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며, 이는 보험회사는 물론 경찰에서도 조회가 가능함.

○ 보험금지급 서비스와 관련하여 ISO는 참여보험회사에 의해 개별 보험금지급정보를 수집하고 자동차보험과 재산보험의 손해이력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ISO 클레임서치는 사회보장번호를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보험금청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범죄이력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ISO 클레임서치가 입수하는 공적정보는 공적기록, 범죄기록, 경찰기록, 자동차기록, 의료기록 등임.<sup>123)</sup>

123) 공적기록은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납세상황, 자동차등록·운전면허정보, 전화번호, 소유 부동산데이터 등이며, 범죄기록은 형사재판기록, 민사재판기록, 성범죄자 등록데이터, 수감기록 등임. 경찰기록은 경찰사고·사건기록, 화재기록, 운전자 이력, 자동차등록 이력, 기상기록 등을 포함하고, 자동차기록은 운전면허정보, 위반이력, 운전조건 정보, 주별 특별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의료기록은 렌트겐 보고서와 의료비 청구기록이 포함된 7백만 건 이상의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의료정보 등임.

- ISO 클레임서치를 통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데이터와 관련하여 공통기본항목, 검색키워드 데이터 송신 후의 매칭 데이터, 추가적인 상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sup>124)</sup>
  - 정보를 송신한 보험회사가 중복청구, 중복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보험금 청구패턴을 발견할 경우 인수 보험회사로부터 더 상세한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임의로 데이터 항목에 대한 추가가 가능하며,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대응하여 더 많은 항목에 대한 검색이 가능함.<sup>125)</sup>

■ ISO는 자동차 및 재산손해 인수심사와 관련하여 A-PLUS Property와 A-PLUS Automobile이라는 최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언더라이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A-Plus Property는 보험 청약자와 재무 소재지 등으로부터 청약자와 사업의 과거 사고이력, 리스크 소재지와 관련한 다른 사람의 사고력을 조사하고, 보험회사에 정보를 제공함.
- A-Plus Automobile은 청약자와 차량의 정보에서부터 청약자와 차량의 과거 사고이력, 동일 차량에 관한 다른 사람과의 사업 사고력을 조사하고 이를 언더라이터와 대리점에게 보고함.

■ ISO의 데이터베이스들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ISO의 개별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방침을 두고 있음.

124) 보험회사가 획득하는 공통기본항목은 보험회사명·사무소 코드, 청구번호, 사고일, 증권번호이며, 데이터베이스 구분에 따른 검색키워드는 보험종류, 담보종목, 사고의 종류, 보험금청구자·피보험자명, 보험금청구자·피보험자 주소, 사고발생 장소 등임.

125) 추가 데이터에는 사회보장번호/납세자번호, 구 성명/가명·구 주소·구 우편번호·생년월일·직업, 전화번호·여권번호, 자동차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지급준비금·지급보험금, 소송관계정보, 조정/판결액, 산재보험에 관한 취업불능기간정보, 도난·동산의 종류, 서비스 제공자(사고관계자 이외) 등의 정보가 포함됨.

- 승인된 주체만 보험개인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개인정보 이용자는 개인정보보호법률과 규정에 따라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해야 함.
- 보험개인정보는 외부손상 및 파괴로부터 안전을 강구해야 하며 각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정보의 접근·이용에 대한 감시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ISO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들은 자신의 정보의 수집 및 사용 범위를 선택할 수 있음.

■ ISO에서 개인정보취급과 관련한 활동은 GLB법, NAIC 모델법, 소비자의 금융·건강정보 프라이버시규칙, HIPPA 프라이버시 규칙, 공정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규제됨.

## 나. 영국

### 1) 보험사기방지국(Insurance Fraud Bureau, IFB)<sup>126)</sup>

- 1995년 영국보험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의 산하기구로 설립되었으며, 범죄 및 사기방지 조치에 대한 조정기구이고, 여러 컴퓨터 자료들을 취합하여 회원사 및 외부의 문의에 대해 응답해주는 단일조사기관임.
- 주요업무는 각 기관 사기조사담당자의 리스트관리, 보험사들에 보험금청구사기관련 정보 제공, 보험사기의 예방 또는 감지에의 이용을 안내한 안내서를 포함한 대외 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찰 및 기타 유관기관의 협조방안 모색, 보험사기 예방관련 캠페인 전개 등임.
- IFB의 보관 정보에는 사기성 사건에 연루된 제3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물론 경찰과 다른 기관에서 전달받은 제보의 상세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고, 데이

126) <http://www.insurancefraudbureau.org/>

터베이스에 정보시스템이 연결되어 의심스러운 클레임에 대한 정보 입수 시 보험사들에게 경고할 수 있음.

-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유의자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IFB는 지능형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여 이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IFB는 정보보호등록청과 협의 후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의 사용과 보유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주요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제보에 의한 정보는 3달 후 파기하는 것을 전제로 함.
- 2012년 9월부터는 보험사기 전과자 등의 인물정보(black list)를 등록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사기자 등록시스템(Insurance Fraud Register System)을 운영하고 있음.
  - 인물정보의 등록기준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기 전과자 외에 자체적 등록기준에 합치하는 사기행위자의 정보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각 보험사는 IFR 시스템을 통해 특정인물의 과거 사기행위 여부를 검색하고, 보험사기 외에 보험금 지급 및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목적에도 이용 가능함.

## 2) 보험데이터서비스(Insurance Database Services Limited, IDSL)<sup>127)</sup>

- 1994년 설립되었으며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사고, 상해, 산재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임.
- 보험데이터서비스는 ‘보험금청구·인수정보 교환시스템(The Claims & Underwriting Exchange, CUE)을 통해 보험회사 간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 2006년에는 영국보험자협회(ABI)로부터 ‘자동차보험사기대책 및 도난등록시스템’(MIAFTR)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음.<sup>128)</sup>

127) <http://www.insurancedatabases.co.uk/>

128) 손해보험협회 내부자료 참조

- CUE는 가계성 및 자동차보험관련 자료를 이용한 지능형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CUE 이용기관은 총 81개이며 이 중 보험회사가 58개임.
  - CUE는 보험사기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약 3천 8백만 건에 대한 클레임 정보를 가지고 있음.
  - CUE의 데이터베이스는 생명 및 손해보험사기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사기성 사건(렌트카 회사, 클레임 처리업체, 의사, 변호사 등)에 연루된 제3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물론 경찰과 다른 기구에서 전달 받은 '제보'의 상세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음.
  - 데이터베이스는 경보시스템과 연결되어 의심스러운 클레임에 대한 정보 입수 시 보험사들에게 경고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자료를 보험 회사가 모두 공유할 수 있음.
  
- MIAFTR(Motor Insurance Anti-Fraud and Theft Register)는 1987년부터 실시된 자동차보험사기대책 및 도난등록제도로써 자동차보험사기의 억제, 적발 등을 위한 정보교환제도임.
  - 보험데이터서비스는 회원 보험회사에 차량도난 및 차량도난 전손처리사고의 정보제공을 의뢰함.
  - 회원 보험회사에서 이 정보를 수시 송신하고 보험금 청구사안 발생 시 해당 사안을 MIAFTR에 집적된 데이터와 함께 조회하여 보험금의 중복 청구 등 사기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으로 활용함.
  
- 보험데이터서비스에 집적되는 개인정보는 영국의 개인정보보호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1988년 데이터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되어 있으나 데이터가 범죄방지 혹은 수사, 범죄자의 체포 혹은 기소, 공소, 혹은 징수 또는 유사한 내용의 부과에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보호원칙(제4조), 데이터 접근권(제7조)은 적용되지 않음(제29조).

3) 자동차보험자기구(Motor Insurers' Bureau, MIB)<sup>129)</sup>

- 자동차보험자기구(MIB)는 무보험차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보험의 가입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과 함께 영국의 자동차보험자의 사무국, 보상기관, 정보센터로서 공동 활동을 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1988)은 영국에서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의무적으로 MIB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함(제145조).
  
- MIB는 회사 내부의 자동차보험정보센터(Motor Insurers' Information Centre, MIIC)에서 자동차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Motor Insurance Database, MID)을 관리 운영하고 있음.
  - MIIC가 관리하는 MID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영국 국내 자동차 보험이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상세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음.
  - MID는 영국에서 자동차보험에 부보된 3,400만대 이상의 등록자동차에 관한 상세한 보험증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MID에서 차량, 보험정보의 등록에 있어서 자가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MID 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단, 자동차 딜러, 택시회사 등 상업목적의 보험계약자는 MID에 자동차정보의 상세한 등록을 자기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중대조직범죄, 경찰법에 의하여 경찰은 물론 운전자, 차량면허국 등도 MID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
  
- MIB의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1998년 데이터 보호법에 근거하고 있음.
  -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88)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법제 관할기관인 정보 커미셔너 오피스와의 협정에 따라 MIIC와 MIB 데이터 관리자로서 MID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된 데이터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음.

129) <http://www.mib.org.uk/>

## 다. 프랑스

### 1) 보험사기방지국(ALFA)<sup>130)</sup>

- ALFA는 보험사기로부터 보험기업과 보험계약자의 보호,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험기업에의 정보제공, 수사당국과의 연대, 연구, 연수 및 조사 네트워크 구축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 1989년 1월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퇴직 경찰관 등을 고용한 각종 보험사기 조사활동과 정부당국과의 연계활동, 보험사들 간의 정보교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보험사로부터 보험 범죄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을 시 직접 조사를 한 뒤 법원 제출용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사로 회신하는 절차를 거쳐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있음.
  - 보험사 상호 간에 보험금 지급청구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원정보, 보험범죄 적발 미수 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교환 등 보험사기와 관련된 각종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ALFA에서는 보험사기의 의문이 있고 사기를 의도하였거나 사기로 보고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금 청구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이 때 교환되는 정보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은 접속코드를 받은 범죄방지 담당자만 파일을 참조할 수 있으며, 관련자 정보는 5년까지만 저장할 수 있음.
  - 이 데이터베이스는 보험기업의 사기대책 담당반이 접근할 수 있으며 코드에 의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매년 300명의 신규 데이터가 등록됨.

130) <http://www.alfa.asso.fr/>

- ALFA의 정보 관련 법적 근거는 데이터처리법 제16조에 의거함.
  - ALFA가 작성하는 보험사기범의 데이터베이스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이고 이는 데이터처리법 제16조에 따라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 시스템에 신고를 하고 있음.
  - 단, 이 데이터베이스는 범죄수사를 위한 것이고 개인정보 수집 시의 정보 제공자에게 통지의무의 적용제외(제27조)로 되어 ALFA는 시스템 인가 외에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있는 것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 2) 보험도난품수색 · 식별 경제이익단체(ARGOS)<sup>131)</sup>

- ARGOS는 도난차, 도난품의 수색, 회수 및 동일성 확인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보험기업 및 경찰관계자들에게 도난차량, 도난품의 데이터베이스, 도난차량수색 및 일반 소비자에 대한 방법정보를 제공함.
  - ARGOS는 도난차량 및 도난 귀중품의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각지에서 조사원 및 보험회사가 접속가능하며, 경찰도 이 정보를 수사에 이용함.
  - ARGOS는 중고차 구매 등과 관련하여 도난 예방책과 도난품 판별방법에 대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도난차량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정보는 차종, 형식번호, 차량식별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특정 정보와 발견 시 외관상의 특징 등임.
  - 도난귀중품의 데이터베이스는 보험자의 조사를 위한 귀중품 정보파일로 미술품, 장식품, 오디오기기, 사진, 비디오, 컴퓨터 기기 등의 공업제품, 운송 중 상업, 공업 제품 등이 사진으로 등록되어 있음.

131) <http://www.gieargos.org/>

- ARGOS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처리법 제16조에 의거 정보처리 및 자유에 관한 국가위원회(CNIL) 시스템에 보고되고 있으며, 데이터처리법 제27조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의 제공자에게 소정의 통지를 하고 있음.

## 라. 일본

### 1)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Non-life Insurance Rating Organization)<sup>132)</sup>

-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관련하여 손해액 산정,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요율산출, 보장사업 조사 등을 위한 정보를 집중하고 있음.
  - 개인정보를 취급한 업무 범위는 동 기구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로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2) 손해보험협회(The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sup>133)</sup>

-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화재·상해보험 등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보험계약내용, 사고 상황, 보험금 청구내용 관련 정보 등을 집중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업계 간 보험정보 교환 항목을 보험계약서 및 상품약관 내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동의를 득하고 있음.

132) <http://www.giroj.or.jp/>

133) <http://www.sonpo.or.jp/>

### 3) 생명보험협회(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of Japan)<sup>134)</sup>

-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공동센터(Life Insurance Network Center)를 통해 생명보험정보의 등록 및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동 협회에 등록된 정보는 동일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등의 청약이 있거나 보험금 등의 지급 청구 시 협회를 통해 생명보험회사,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제공되며, 동 생명보험회사 등은 보험계약의 인수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 판단 시 참고용으로 이용함.

---

134) <http://www.seiho.or.jp/>

---

## V. 보험개인정보법제 개선방안

---

### 1.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해소

#### 가. 개요

-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적용 법률의 다기화”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용 법률의 일원화”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동 해소방안은 산업별 특성의 반영 및 사회 각계의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관계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1·2·3단계 과제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사료됨.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① 현행 개인정보법제의 유지를 통해서도 가능한 1단계 방안(보험개인정보의 해석원칙 및 처리기준 마련)과 ② 현행 개인정보법률 간 중복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2단계 방안(개인정보법률 간 체계 재정비), 그리고 ③ 궁극적 목표인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적용 법률 일원화 방안(3단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한편, 올해 초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각 개인정보법률의 통합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개정방안 마련 시 이를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00년 이후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기관 등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는 산재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상의 문제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법과 개인정보를 전담하는 관리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임.
  - 즉, 기존의 정보통신, 금융, 교육, 의료분야 관련 법령에 산재되어 있던 개인정보보호 규정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하고,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특칙으로 제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법률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개선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관련 부처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통합이 각 분야별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현행 체제하에서 비효율성을 축소하는 쪽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입장임.
  - 개인정보는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된 쟁점이라 단일법으로 통합할 경우 대외환경변화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 어려워진다는 것임.
  - 더불어, 통합 논의도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재정비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 나. 보험개인정보의 해석 원칙 및 처리 기준 마련

### 1) 보험분야의 개인정보법률 간 해석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마련

-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동일한 소비자와 동일한 보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보험정보의 수집경로와 수집정보의 유형에 따라서 그 적용 법률이 다양하게 나뉘는 것이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의 현실임.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보보호에 관한 일반원칙만을 선언한 수준이고 사용된

용어들도 ‘필요최소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용어들이 많아 보험회사나 보험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모호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임.<sup>135)</sup>

■ 또한 개인정보법률의 기본법(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다수의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음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기화되고 중첩되어 법 적용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정책당국은 보험회사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적용법규의 혼란으로 인해 부지불식 중에 불법행위를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다수 법률 간의 상호중복·충돌·누락요소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석 및 적용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령 단계에서 규정하기 곤란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기준들을 지침 등의 형태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안전행정부 등이 2013년 7월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이는 금융 전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험업의 현황 및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동 가이드라인 만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행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의 “참고용 자료”에 불과한 실정임.

135) 박재현(2014), p.15.

- 더불어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은 금융분야의 특성이나 개인정보법률들 간의 규제목적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한 비교분석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법률들 중 가장 강한 규제들만을 모아 정리한 기준에 불과한 것이 되었음.
- 이에 실무에서는 동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 경우에도 타 법률에 위배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제정될 「보험분야 가이드라인」은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법적 근거를 두어 강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sup>136)</sup>, 준수에 따른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실무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도 단순한 보충성의 원칙을 따를 것이 아니라,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성을 부여하는 등 실용성도 제고하여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금융청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책임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나 보험협회 또한 동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인정단체로 지정받고 「개인정보보호 자율지침」을 제정하여 회원사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음.

## 2) 보충적용 기준의 명확화

■ 보충성의 원칙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특별법이 있으면 그 특별법이 적용되고 특별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서 나타난 것임.

136) 현행 「금융분야 가이드라인」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으나, 강제력을 가진 법 규범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개인정보보호법은 제6조에서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별법임을 명시하고 있어 이들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됨.
-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특별법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일반법의 보충적용 시에도 개별 법률의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현행 법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용함에 있어 법률별 특성 차이나 산업별 규제목적 차이를 간과하고 단순하게 무조건적인 보충적용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법 적용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 여기서는 ‘단순한 보충적용’과 ‘특성을 반영한 보충적용’과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 V-1>을 이용하여 일반법과 특별법 간 보충적용원칙의 사례를 논리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일반법과 특별법 내에 상호 연관성 있는 규정 1·2·3이 있다고 가정할 때, 표에서처럼 5가지의 사례가 논의될 수 있으며, 여기서 일반법과 특별법 내에 명시적 규정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①, ③)는 문제가 되지 않음.
- 그러나 특별법상 전부나 일부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일반법의 내용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바, 사례 ②·④·⑤의 경우 단순히 무조건적인 보충적용을 하는 ‘보충적용(1)’의 경우와 산업이나 법률제정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충적용을 하는 ‘보충적용(2)’의 경우는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사례 ②의 경우처럼 특별법의 경우에도 모두 A·A·A가 적용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음.
  - 그러나 사례 ④의 경우처럼 상호 연관된 규정 중 ‘규정3’이 없는 경우, 단순한 보충적용의 경우에는 ‘BBA’가 적용되어야 하나, 이 경우 상호

연관된 규정들 간에 정합성이 문제될 여지가 큼.

- 일반법은 관련 규정들이 'AAA'의 경향을 취하고 있는 반면, 특별법은 'BB'로서 다른 성향을 보이는 만큼 단순한 보충적용으로 'BBA'로 적용된다면 특별법의 관련 규정 간 이질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즉, 이 경우 특별법은 전체적으로 'B'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3에는 보충적용의 원칙에 따라 'A'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간 충돌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임.
-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특별법의 취지나 특성을 반영하여 'BBB' 또는 'BB'로 해석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임.

〈표 V-1〉 일반법과 특별법 간 보충적용원칙 적용 사례

구분	구분	규정1	규정2	규정3	보충적용(1)	보충적용(2)
①	일반법	A	A	A		
	특별법	A	A	A		
②	일반법	A	A	A		
	특별법	A	A	-	AAA	AAA, AA-
③	일반법	A	A	A		
	특별법	B	B	B		
④	일반법	A	A	A		
	특별법	B	B	-	BBA	BBB, BB-
⑤	일반법	A	A	A		
	특별법	-	-	-	AAA	AAA, BBB, - - -

■ 결론적으로 관계법령 간에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라 선순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후순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 법률의 입법공백으로 보아 후순위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선순위 법률 및 해당 규정의 취지가 후순위 법률에 기재된 요건이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거나 특별법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법 공백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 법률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표 V-2〉 보충적용원칙의 적용기준 예시

관계법률 관계		적용방법
충돌		선순위 법률 적용
선순위 법률 에 규정 부재	입법공백	선순위 법률 적용 후 후순위 법률 보충적용
	절차·요건 등 간소화, 특성반영	선순위 법률 적용(후순위 법률 보충적용×)

## 다. 개인정보법률 간 체계 재정비

### 1) 중첩규정의 합리적 조정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법체계가 일반법-특별법의 체계를 비로소 갖추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법의 제정은 개인정보법체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타법률과의 정합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음.<sup>137)</sup>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여타 개인정보법률에 동일한 규정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 규정이 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의 명시적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양 법률 사이의 관계설정이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해석을 불러올 여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임.
  - 제3장에서 설명한,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규정을 예로 들자면, 신용정보법은 질병정보 이외에는 개인정보의 수집동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반면, 정보통신망법은 사전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에 더하여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하여 사전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음.

137) 김민호(2011), pp.11~12. 참조

-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특별법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사항과 동의예외사유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세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업에서의 적용실무를 보더라도 금융분야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고지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규정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렇다면 여기서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의 해당 규정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이기 때문이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관련 규정의 개정작업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체계의 정합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합성 부족문제의 해결방법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간의 중첩규정들을 일반법-특별법의 법률관계의 법리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각 분야별 개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 사항을 제거하고, 제재수준 일원화 등을 통해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sup>138)</sup>
- 무엇보다도, 관련 규정들이 개별 산업에 대한 특별한 입법 취지 없이 단순히 중첩규정된 경우나 차이가 나는 부분이 단순한 절차상의 미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법 이외의 개별법상의 규정은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개별법상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체계의 확보를 위하여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법과 동일하되, 일반법 개정 시 동일한 개정작업을 수반토록 하여 규정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138) 배대현(2014), p.15.

- 그러나 규정차이가 특정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첩조항들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적용에 있어 현재와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별법상에 그 취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주민등록번호의 원칙적 처리금지조항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특별히 마련된 조항으로서 타법률에도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규정의 경우에는 동 조항을 강행규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배제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금융분야와 정보통신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
  - 동 법률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규정체계를 가지고 있어 현재에도 ‘준일반법’으로 대우받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체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다기화와 그로 인한 적용 법률의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의 경우는 더욱 그러함.
  -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만으로 그 적용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규정들과 대부분 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은 신용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도 적용됨에 따라 신용정보법과의 중첩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새롭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sup>139)</sup>
  - 본격적인 정보사회의 단계로 접어든 오늘날 대다수의 개인은 일상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자신에 관한 일체의 정보가 인터넷 기타 정보통신망을 통해 처리되는 상황을 피해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가 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굳이 특별법에 의해 규율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임.
  - 우리나라의 2013년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79.8%<sup>140)</sup>로 인터넷이 사회 전반의 기본적 인프라로 정착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활동이라고 하여 별도의 영역으로 취급하고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더 이상 인정받기 곤란함.
  
-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제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을 통해 규율함으로써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모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전문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sup>141)</sup>에 대한 규제 업무의 특성상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sup>142)</sup>로만 그 규제대상을 제한할 수도 있을 것임.

139) 권건보, 토론자료(『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4.2.3) 참조

140) 인터넷 보급률은 가구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의 비율(%)이며,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접속은 제외함(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14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

142)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2), p.10. 참조

## 라. 보험개인정보의 적용 법률 일원화

### 1) 최근 통합법 제정 논의<sup>143)</sup>

■ (통합법 제정 의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법을 특별법으로 취하는 일반법-특별법 체계이기 때문에 규제 인식 및 집행상 혼선이 발생하므로, 하나의 통합법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법적용을 하면 규제가 단순화·일원화되어, 분리감독 체제 시 우려될 수 있는 규제의 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통합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sup>144)</sup>

○ 통합법 제정 시 모든 국민은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하나의 법률만 준수하면 되므로 중복 규제는 없어지고, 규제도 불공평하지 않으며,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피해구제의 난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통합법으로 인하여 각 주무기관 사이의 규제 정도나 전문성 등이 비교 가능할 것인 바, 각 주무기관 사이의 선의의 경쟁이 유도되어 개인정보 보호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한 것임.

■ 이러한 통합법 제정 논의에 대하여, 법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주무부처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부처가 계속 소관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일법률 공동소관)과 조직도 통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음.

○ (주무부처 통합 의견) 개인정보법률이 단일법으로 정비가 이루어져도 주무부처가 다수 존재하면 법 개정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므로, 개인정보보호

143) 국회의원 진선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2014.2.3; 국회의원 강은희,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 2014.3.21;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책』, 정책토론회, 2014.3.20. 참조

144) 김경환b(2014), pp.27~45. 참조

정책 및 규제 책무의 이행 기관은 독립적으로 통합된 기능이 부여되어야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무부처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조직 현행유지 의견) 한편, 주무부서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견은, 지금의 틀을 깨고 하나의 기관이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법 및 집행을 전담하는 것은, 그간에 정착된 우리나라 행정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행정비용과 사업자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간에 쌓아온 사업자에 대한 주무기관의 전문성을 무용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각 주무기관은 기존대로 유지·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 개인정보에 대한 행정은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통합 감독기구가 다양한 업종에 산재해 있는 수백만개의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고, 통합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단속을 위하여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안전행정부의 관련 인원보다 더 늘어날 확률이 매우 크며, 특히 기존 주무기관의 그간에 쌓인 노하우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여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임.

- (현 법률체계 유지 의견) 한편,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는 단일법을 만들어 기본 원칙과 함께 각종 특수 분야의 규정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률 간 부정합을 해결하고 분야별 규제 일관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 분야별 개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 사항을 제거하고, 제재수준 일원화 등을 통해 법률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함.<sup>145)</sup>

- 개인정보는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단일법으로 통합

145) 동 의견은 결론적으로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불명확 및 중첩적용의 해소를 위한 2단계 해결방안(개인정보법률 간 체계 재정비)과 맥을 같이함.

할 경우 모든 부처 및 상임위가 공동 소관이 되는 바, 이로 인하여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적시 개정과 각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이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함.

-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통합 단일법을 따르고 기타 법인 및 단체 정보에 대한 사항은 신용정보법에 따라야 하므로 법 체계에 따른 혼란은 여전할 것임.
  - 이와 더불어 규율 대상이 늘어나고 복잡해짐에 따라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도 분법화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해서 규율할 수 있을지도 의문임.
- 또한, 현행 개인정보법제인 일반법-특별법 체계는 산업별 특성 반영, 행정 효율성, 국제적 트렌드 반영 등에 있어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부각시킴.

## 2)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 일원화 방안

### 가) 개인정보법을 통합 시 : 보험관련 통합특별규정 신설

■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법률의 통합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보험개인정보에 대해 적용 법률을 일원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동 통합법률 내에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법률의 통합에 관한 최근 논의는 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과 준기본법(신용정보법 및 정보통신망법) 간의 정합성 제고 차원에서 의 통합 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법률을 통합한다고 해서 모든 산업의 특별규정까지 동 법률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통합법 내에 특별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적 개인정보보호규정들을 보험업법 내에 신

설함으로써 보험개인정보 적용 법률을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는 기본법인 정보처리법에 근거한 「간략화 규범」에서 보험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NAIC 표준모델법이나 NCOIL 모델법을 반영한 주 보험법이 여타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나) 현 개인정보법제의 유지 시 : 보험분야의 기본법 제정

■ 개인정보법률 간의 통합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행 일반법-특별법 체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보험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적용 법률의 중첩으로 인한 혼란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i) 금융회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기본법을 별도로 제정하거나, 현재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준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을 금융기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법으로 개편하여 보험회사가 업무상 취급하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 만드는 방법이나, ii) 보험산업의 근거법률인 보험업법에 보험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험개인정보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 재정립하는 방법이 있음.

-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 사실상 금융권의 기본법으로 적용되던 신용정보법은 금융업무 중 여신업무에만 주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동법만으로 모든 금융업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금융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거나 신용정보법을 금융분야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것임.
- 한편,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보

협업법을 보험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률로 재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음.

- 그러나 금융분야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국회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을 금융분야의 기본법화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각 산업별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임.
  - 특히, 보험산업의 측면에서 보건데, 보험정보가 신용정보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기존 신용정보의 개념을 확대·정의할 필요가 있으며<sup>146)</sup>, 정보주체가 금융거래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은 이유로 동의예외사유의 확대가 필요하고, 건전한 보험제도의 운영을 위한 정보의 공동이용제도가 전제되어야 하나, 현재의 개정작업에서는 이러한 보험의 특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신용정보집중기관만을 일원화하고자 하고 있어<sup>147)</sup> 보험산업 내의 반발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정임.

■ 여기서 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를 보험업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내에 보험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총괄적 규정의 신설이 수반되어야 함.

- 동 총괄규정에는 보험개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가 재정립되어야 하고, 보험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보험회사의 정보이용 범위, 개인정보 보호 절차 및 방법, 보험업법 우선적용규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보험개인정보의 보호는 보험업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보험업법을 보충하는 형태가 될 것임.

146) 신용정보란 '상거래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로 정의되므로, 보험계약정보나 보험사고정보가 현행 신용정보의 정의에 포함되기 쉽지 않음. 보험계약정보의 경우 특정인 소유의 자동차 파손 시의 보상을 위한 자동차 자차보험계약이나, 특정인의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계약은 특정인의 신용도와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임. 보험사고정보의 경우도 소유 자동차 수리 내역이나 감기 등의 치료 내역 또한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147) 김영도(2014), pp.22~33. 참조

## 2. 보험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기능 강화

### 가. 2014년 3월 정부 종합대책의 주요내용<sup>148)</sup>

■ 최근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과 과거 해킹사고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종합적 재발방지 방안의 마련을 골자로 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다음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개인정보의 「수집-보유·활용-파기」 등 단계별로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금융회사 책임을 대폭 강화함.
- CEO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모집인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형벌과 행정제재 상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보호의 일반법보다 책임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함.
-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보안 이행실태 점검·보안전담기구 설치 등으로 상시적인 보안체계를 구축토록 함으로써 기존 대책(2013년 7월 발표)을 대폭 보강함.
- 이미 계열사와 제3자에 제공되었거나 외부유출된 정보로 인해 잠재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함.

■ 상기의 4가지 기본방향 중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와 관련된 부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집-보유·활용-파기」 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 (수집) 그간 금융회사가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소홀하게 관리하였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

148) 금융위원회 등(2014)에서 발췌함.

- 현재 30~50여 개에 이르는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정보 6~10개 등 필요최소한만 수집함.
  - 필수정보 외 부가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추가적 정보 수집은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고지하고, 수집목적·제공처 등을 설명한 후 고객동의하에 수집함.
- (보유·활용) 금융지주회사 내 계열사 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계열사 간 정보 제공 시 이용기간을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함.
- 제3자 정보제공 시 포괄적 동의를 금지하고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선택적 제3자를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며, 정보이용 목적, 제공업체, 제공기간, 파기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함.
- (파기) 거래종료 후에는 식별·거래정보 등 일정기간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제외한 여타 신상정보 등은 즉시(3개월 이내) 파기함.
- 보관정보도 법령상 추가 보관의무 등이 있는 불가피한 경우만 제외하고 5년 내 파기함.
-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 금융회사가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을 개편함.
  -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고 필수사항 동의로 계약 체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
- (정보 이용현황 조회권) 고객이 본인 정보의 이용·제공 현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별로 조회시스템을 구축함.
  - (정보제공 철회권)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의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

- (연락중지 청구권)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차단(Do not call)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정보보호 요청권) 거래종료 고객이 본인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가 파기 또는 보안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 (신용조회 중지 요청권)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대출 등을 위한 신용조회를 일정기간(예 : 1일간) 중지함.

■ 상기와 같은 정부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은 본 보고서에서 논하고자 하는 ‘보험개인정보의 보호기능 강화방안’과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상기의 정부 종합대책을 토대로 하되 보험산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험소비자 보호방안을 논하고자 함.

#### 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강화

- 자기정보통제권(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sup>149)</sup>으로 헌법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권리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정보통제권은 그 내용에 따라 크게 수집통제권(수집동의권), 보유통제권(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삭제·차단청구권) 및 이용·제공통제권(중단청구권, 추가적 동의권) 등으로 구분됨.
- 이러한 자기정보통제권은 절대적 권리는 아니며, 거래관계나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그 권리의 행사가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49) 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42789 판결.

○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고객정보는 고객과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된 것으로서 금융회사의 자산이기도 하며, 또한 고객정보는 금융회사가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어수단이 되기도 하기 때문임.

– 따라서 고객의 개인정보라고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금융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비교형량을 통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sup>150)</sup>이 힘을 얻어가고 있음.

○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보험회사와 거래관계를 맺은 후에는 삭제청구권, 차단청구권, 중단청구권 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권리의 행사가 제한 받을 수 있는 것임.

–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2항).

■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제한을 논의하기 이전에, 정보주체가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전술한 것처럼, 포괄적 동의가 일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보가 어디로 제공되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보주체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임.

150) 박재현(2014), p. 16.

- 여기서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본인 정보의 제공·조회·삭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임.

■ (통지제도 의무화) 따라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개인정보처리자(보험회사 등)가 개인정보를 이용·제공·조회할 때마다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제도의 도입을 의무화 하는 것임.

- 사전동의제도를 통하여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제공 내역을 이미 통보하고 동의를 얻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이러한 통지제도의 의무적 도입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무시하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으나,
- 최근의 카드사 유출사태 이후 사전동의제도가 포괄적 동의나 강제적 동의 수령으로 말미암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고<sup>151)</sup>, 오히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할 뿐이라는 인식이 이미 사회적으로 퍼져 있어, 통지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보험범죄의 적발이나 보험요율 산출 등을 위한 경우는, 수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내역을 감출 필요가 있거나 알리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지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임.

■ (이용현황 정기공시 및 개별확인제도) 또한 보험회사 또는 보험정보집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조회망의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보험소비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제공되

151) 동의에 기초한 개인정보법제는 개인에게 정보에 대한 의미있는 지배권을 부여하겠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개인에 대한 좁은 시각으로 개인정보가 가지는 보다 큰 사회적 차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Daniel J. Solove(2013), pp.1899~1900; 정순섭(2014), p.100.에서 재인용함.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개인별 확인제도의 도입도 필요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부터 제공동의나 조회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회사의 개인정보 처리 남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기 때문임.

■ (두낫콜제도 확대 도입) 한편, 최근 정부는 카드 유출사태 이후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권별로 두낫콜(Do Not Call) 시스템을 확대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두낫콜 시스템은 소비자가 광고성 전화를 원치 않을 경우 온라인상으로 수신 의사거부 표시를 일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앞서 설명한 자기정보통제권 중 보유통제권(삭제·차단청구권/연락중지청구권)에 해당함.

– 동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정보주체의 권리이지만, 각 개별법 또한 동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권리는 각 개별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대부분의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신용정보법 제37조), 이용자의 권리(정보통신망법 제30조) 등의 관련 규정에서 연락중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동 규정에 근거해 개인정보 처리회사 등에 연락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sup>152)</sup>

• 다만, 동 법률들은 개인정보 처리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152)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우편과 전화를 구분하여 규제에 차이를 두고 있음. 즉, 전자우편의 경우에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opt-out)하고 있는 반면,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의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out-in)하고 있음(제50조).

- 현재 법상 근거를 두고 있는 두낫콜 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운영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사거부 등록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음.
  - 동 법률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자는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신거부사거부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사거부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사거부를 등록한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를 하지 못함.
- 한편,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2013년 11월부터 두낫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sup>153)</sup>, 동 제도는 운영상 법적 근거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보험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계약정보’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동 제도의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수신거부사거부 적용기간 등 세부 운영사항을 보험업법상에 명확히 규정하고, 동 제도의 적용 대상을 ‘모든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보험정보’로 확대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이 실질적으로 자기정보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3)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동법 제3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신거부사거부 등록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음.

〈그림 V-1〉 보험개발원의 ‘Do Not Call’ 서비스



#### 다. 보험회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강화

##### ■ 업무제휴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보험회사의 책임강화

○ 보험회사가 업무제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보험마케팅을 수행하는 경우, 제휴회사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임.

- 이는 제휴회사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제공하였거나, 제휴회사가 개인정보 제공회사인 보험회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 동의를 수령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일 것임.
- 그러나 금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종합대책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임.

○ 그러므로 이에 더하여 제휴회사로부터 업무제휴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회사로 하여금 제휴회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나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도록 하는 등 보험회사에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부당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제휴회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시점에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되었음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집중사자의 보험마케팅 시 개인정보 이용 제한

○ 통신판매업 등으로 대량의 고객을 보유한 회사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여 자사의 고객에게 보험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험마케팅에 이용되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홈쇼핑을 통한 보험판매가 실시된 이후 홈쇼핑업체들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음.

○ 또한 자사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공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획득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험대리점 제도가 악용되기도 함.<sup>154)</sup>

○ 따라서 이 경우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험마케팅에 이용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정부종합대책에서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모집인의 계약 승인 시 ‘모집경로를 확인’하여 적법정보를 활용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정보 활용 시 모집인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도 엄정한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힘.

154) 오마이뉴스(2006.11.16), “보험영업, 고객이 OK할 때까지?”

### ■ 보험모집인의 비밀준수의무 및 개인정보 누설금지의무 신설

- 보험거래에 있어 보험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조직은 보험모집조직이므로, 보험모집종사자들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근본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용할 개연성이 높음.
  - 보험모집인들은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금융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증이나 은행통장사본까지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보험소비자 정보를 변경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보험업법상 교통법규위반정보 및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의 준수의무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금지의무가 없으므로<sup>155)</sup>, 이를 보험업법상에 확대·신설하여 보험모집종사자들의 보험고객정보 보호 의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하여 보험회사에게는 모집종사자의 비밀준수·누설금지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교차모집설계사의 경우는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1호), 동 규정은 비밀준수의무를 다른 보험회사에게만 한정하고 있을 뿐임.

## 라. 사전동의 수집제도의 합리화

- 제3장에서는, 보험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제1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보충적용되어 동의를 수령해야

155) 개인정보법률인 신용정보법(제42조), 정보통신망법(제28조의2) 및 개인정보보호법(제59조)은 모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조항을 두고 있어, 동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누설한 보험모집종사자를 처벌할 수는 있음.

한다는 의견(제2안)이 모두 가능함을 서술한 바 있음.

- 제1안은 특별법인 신용정보법은 신용거래에 있어 질병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신용거래는 기본적인 신용정보의 제공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신용정보주체의 청약 등에는 이미 신용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묵시적 동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신용정보법을 우선 적용하여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임.
- 제2안은 기존 입법상의 공백을 메우고자 새로이 입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수집 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임.

■ 그러나 본고에서는 제1안과 제2안의 절충적 입장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안에서처럼 기존 입법상의 공백을 메우고자 새로이 입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여 수집 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제1안처럼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보호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제3안)을 제시하고자 함.
- 1안에 의하면 <표 V-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필수정보뿐만 아니라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선택정보도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될 우려가 있고, 제2안에 따르면 신용거래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정보에 대하여도 불필요하게 동의를 수령하여야 하므로, 필수정보에 한하여 동의수령의무를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안의 의견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임.

〈표 V-3〉 사전동의 수집제도의 합리화 방안

의견	보험채널	적용 법률	정보유형	동의	비고
1안	오프라인	신용정보법	필수정보	×	신용정보법에는 질병정보 이외에는 수집 시 동의의 여부에 대한 규정 없음
			선택정보	×	
	온라인	신용정보법	필수정보	×	
			선택정보	×	
2안	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법 보충적용	필수정보	○	특별법의 입법공백 부분에는 예외 없이 일반법이 보충적용됨
			선택정보	○	
	온라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보충적용	필수정보	○	
			선택정보	○	
3안	오프라인	개인정보보호법 보충적용	필수정보	×	필수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선택정보	○	
	온라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보충적용	필수정보	×	
			선택정보	○	

■ 한편, 보험의 가입설계단계(보험계약 청약 이전 단계)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유인하는 행위이지 보험계약 체결행위가 아니므로 아직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가입자가 본인의 보험정보를 제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결심한 단계도 아니므로 개인정보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수집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 모두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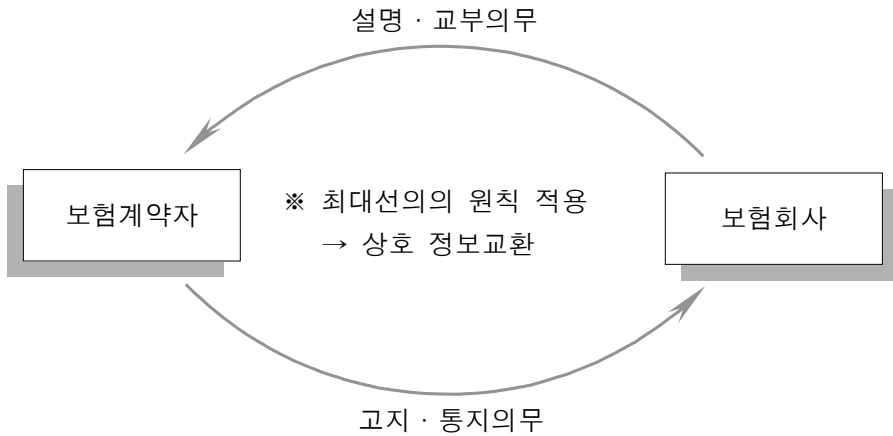
### 3. 보험개인정보의 활용성 제고

#### 가. 공동이용 근거 및 개인정보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 마련

##### 1) 전체 보험정보의 공동이용 필요성

- 보험계약은 최대선의를 기초를 둔 계약이며, 보험계약이 이와 같이 당사자의 선의에 기초를 둔 인적 선의계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임.
  - 물론 선의성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받아들여져야 할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특히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데서 그 선의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임.
  
-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최대선위의 원칙에 기초해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보험회사의 설명·교부의무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가 그것임.
  - 보험계약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모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상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약관에 대한 교부의무와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한편, 보험계약은 형식적으로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1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지만, 보험은 위험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바,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도움 없이는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상태나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상법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중복보험 통지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림 V-2〉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정보교환의무



- 그러나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계약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모든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정보를 집중할 유인이 존재하는 것임.

- 더불어 보험회사는 보험정보 공유를 통해서 보험가입자의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음.<sup>156)</sup>
  - 거래당사자들이 보유한 정보가 다른 상태인 정보비대칭은 다시 감추어진 특성(hidden characteristics)의 상황과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의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감추어진 특성의 상황이라 함은 거래당사자나 거래상품의 특성을 거래당사자 중 한 쪽만이 알고 있는 경우로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중고차의 품질에 대해 알지 못하고,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해 알지 못하

156) 김경환a(2007), pp.18-37. 참조

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운전습관이나 건강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은 감추어진 특성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역선택은 보험시장에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과 보험을 제공하려는 보험회사 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불리한 선택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선택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해결 방안으로 선별(screening)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측에서 상대방의 속성을 판별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는 것을 말함.

-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고객에게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위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추출해 내거나, 과거의 보험정보나 의료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해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사이에 비로소 정보의 균형상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임.

○ 반면에 감추어진 행동은 거래관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쪽 당사자의 행동을 상대가 관찰·통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나 차체가 튼튼하기로 유명한 자동차의 운전자가 에어백이 없는 자동차나 차체가 약한 자동차의 운전자보다 최고속도를 위반하는 경향이 높은 현상,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집에 대한 화재예방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심지어는 방화하는 현상 등이 감추어진 행동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라고 함.

– 도덕적 위험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취하는 행동이 모두에게 영향이 미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그의 행동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경우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발생함.

-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사고방지나 손실축소 노력을 완전하게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 보험가입 후의 보험계약자 행동 변화인 도덕적 위험은 본인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이로 인한 보험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자신의 보험경력을 관리하게 만드는 것임.

- 그리고 할인·할증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정보의 집적 및 공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2) 공동이용근거 마련 및 개인정보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

■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특성상 그리고 전체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험회사 상호 간에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근거는 “동의예외 조항”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험산업의 특성상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보험정보 제공·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법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 동의예외조항은 인적예외조항(사람 중심의 예외 조항)과 목적별 예외조항(업무 중심의 예외 조항)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먼저, 보험산업에 있어서는 인적예외조항이 필요한 바, 보험계약은 여타의 금융계약과는 달리 사전에 계약상의 이해관계자인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나 피해자가 확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금의 지급이 사후의 불확실한 사건에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수령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 동의예외조항을 사람 중심으로 규정한다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정보주체가 법률적 의사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상해 등으로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자가 타인인 정보주체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의예외를 사람중심으로 규정할 경우에도 의도적인 미동의자의 정보는 활용이 불가능하며, 새로운 보험상품 및 제도의 출현으로 동의가 불가능한 사람을 완벽히 규정할 수는 없을 것임.

○ 다음으로 보험정보의 활용목적별로 동의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도 존재하는 바, 보험요율 산출 및 보험통계 작성, 중복보험(계약 및 사고) 확인, 보험범죄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경우 등이 그것임.

-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보험가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종목별 참조순보험요율의 합리적 산출에 필요한 경우, 사고예방유도와 가입자의 사고위험도에 따른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제도인 가입자별 보험료 할인·할증률의 산출에 필요한 경우, 상법상의 손해보상원칙(실손보상)과 보험금지급적정화(보험의 사행화 예방)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보험영업양도 및 보험계약 이전을 위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임.

- 특히, 보험회사와 유사보험회사 및 정부당국 간에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사기에 관한 체계적인 자료집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의 즉시성 있는 집적뿐 아니라, 공제정보(장기적으로는 공영 보험정보 포함)까지도 통합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제4장의 해외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보험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바, 동 사례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일본의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특정인과 공동이용하는 경우, 그 공동이용자를 제3자로 취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즉,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공동이용을 구분하여, 제3자 제공에 대해

서는 동의주의를 엄격히 적용하지만,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특정목적에 한하여 보험회사 간(또는 보험회사·공제기관 간)의 공동이용 시에는 사전동의를 면제하자는 것임.

- 이 경우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취지, 공동이용 항목, 공동이용자의 범위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거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도 통지를 하는 것이 취지에 어긋나거나(보험범죄의 적발을 위한 경우 등) 통지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만을 가져올 뿐인 경우(보험요율 산출이나 중복보험 확인 등)에는 통지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지금까지 논의한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수집과 정보주체로의 통지사항을 정보제공 목적별로 요약하여 다음의 <표 V-4>와 같이 보험개인정보의 제공 목적별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표 V-4> 보험개인정보 제공목적별 보호규제 차등화 방안

제공목적	공동이용		제3자 제공		연간이용 내역통보
	동의	통지	동의	통지	
보험범죄 방지	×	×	×	×	×
할인할증 등 보험요율 산출	×	×	×	×	○
중복보험 확인	×	×	×	○	○
보험인수 심사	×	○	○	○	○
보험마케팅에의 활용	○	○	○	○	○

## 나. 언더라이팅에의 활용 근거 마련

- 제3장 제3절의 문제점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험회사는 적정한 언더라이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계약자 등의 소득정보, 건강 및 의료정보, 신용정보 등이 필요하며, 특히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보험청약거절자 명단(보험가입 부적격자 등), 보험인수유 의자 명단(다수 보험금 지급대상자 등)의 공유가 필요함.
- 그러나 상기의 정보들은 보험계약자 등의 측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정서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동 정보의 활용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 등에 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합리한 차별을 할 수 없으므로, 상기 정보를 언더라이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정보의 활용이 합리적이고 필요불가결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나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경력자료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질병정보 이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수집을 금하고 있는 바, 신용정보를 보험계약 체결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함(제23조 제1항).
- 「소비자기본법」은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제19조 제2항).

○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유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제176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 동 조항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활용에 제한적 소지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이 보험사기 적발자 명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함.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합법이나 보험업법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자 명단, 보험거절자 명단, 보험유의자 명단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sup>157)</sup>

○ 참고로, 미국 ISO, 영국 보험사기방지국(IFB), 프랑스 보험사기방지국(ALFA)에서는 보험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보험범죄자(적발자) 명단을 공유하고 있음.

157) 최근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이 있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동 사안은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한 사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으며, 동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이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내림(헌법재판소 2012.7.26. 선고 2010헌마446 결정).

##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12), 『해외 개인정보보호 집행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주요 동향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2. 12.
- \_\_\_\_\_ (2013),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2013. 8.
- 권건보(2005),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12. 10.
- 금융감독원(2012), 「보험업계 보험계약정보이용실태 검사 결과」, 보도자료, 2012. 12. 14.
- \_\_\_\_\_ (2014),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세 지속, 1인당 사기금액 급증」, 보도자료, 2014. 3. 19.
- 금융위원회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안전행정부 · 방송통신위원회 · 금융감독원(2014),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보도자료, 2014. 3. 10.
- 김경환a(2007), 『한국 자동차보험시장의 정보비대칭에 관한 실증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
- \_\_\_\_\_ (2010),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의 시사점」, 『KiRI Weekly』 제105호, 2010. 11. 8, pp. 1~11.
- 김경환b(2014),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문제점과 대안」,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 국회, 2014. 3. 21.
- 김민호(201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에 따른 제도정비방안」, 『2011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인터넷법학회, 2011. 4.
- 김상미(2012),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KISO Journal』 제7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12. 7. 9, pp. 32~39.
- 김선정(2003),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손해보험』 2003년 2월호, 손해보험협회.
- 김성태(2007),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자료, 2007-4, 2007. 3.

- 김연수(2001), 『개인정보보호』, (주)사이버출판사, 2001. 7.
- 김영도(2014), 『신용정보 집중체계 개편 논의』 공개토론회, 한국금융연구원, 2014. 5. 26.
- 김재광(2005), 「영미법계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동향 및 함의」, 『공법학연구』 제6권 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pp. 109~153.
- 맹수석(2010),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신용정보 보호법제의 주요 내용과 법적 문제」, 『법학연구』, 제37권.
- 박재현(2014), 「개인정보보호법이 은행업무에 미친 영향 -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책』 세미나, 국회 정책토론회, 2014. 3. 21.
- 박준국(2006), 「개인신용정보 언더라이팅 활용방안」, 『생명보험』, 2006. 4, pp. 22~39.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해설서』, 2012. 9.
- 배대현(2014), 「개인정보보호법체계의 정합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국회, 2014. 2. 3.
- 생명보험협회(2004), 『구미 각국의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규제』, 2004. 8.
- \_\_\_\_\_ (2007), 『구미 각국의 생명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규제 I』, 2007. 12.
- 송윤아(2012), 「고의성 없는 고지의무 위반 감소 방안」, 『KIRI Weekly』, 2012. 8. 27.
- 안전행정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2013),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3. 7.
- 양용석(2010).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과 제도 동향」, 『주간기술동향』 1443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4. 28, pp. 17~29.
- 유주선(2013),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법률적 문제점과 대안모색』, KIRI 세미나 자료, 2013. 1. 21.
- 이상경(20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와 현황에 관한 일고」, 『세계헌법연구』 제18권 2호, pp. 195~214.

- 이은영(2008), 「개인정보보호규제의 기회비용 및 국내법 개정을 위한 제언 -금융부문 개인정보보호규제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4권 3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pp. 21~37.
- 장주봉(2012),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제3권, 2012. 12.
- 전은정·김학범·염홍열(2012),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정보보호학회지』 제22권 2호, 2012. 4, pp. 58~72.
- 정순섭(2014), 「금융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책』 세미나, 국회 정책토론회, 2014. 3. 21.
- 총무처(1994), 『축조해설 개인정보보호법』, 1994.
- 한국개발연구원(2013), 『보험정보 집중·활용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보고서, 2013. 10.
- 한국정보보호진흥원(2007),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연구』, KISA-RP-2007- 0002, 2007. 7.
- \_\_\_\_\_ (2009),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동향 조사』, KISA-WP-2009- 0033, 2009. 6.
- 함인선(2012), 「EU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저스티스』 제133호, 한국법학원, 2012. 12, pp. 5~38.
- 행정안전부(2011),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12.
- 황인호(2001),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Daniel J. Solove(2013), “Privacy Self-Management and the Consent Dilemma” *Harvard Law Review* Vol 126.
- Henry H. Perrit Jr.(1996), *Law and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Wiley Law Publications.
- Privacy Rights Clearinghouse(2001), Fact Sheet 24a: *Financial privacy: How to Read Your “opt-out” Notices*, <https://www.privacyrights.org/financial->

privacy-how-read-your-opt-out-notice,

Weible, R.J. (1993), *Privacy and Data*, 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pi State Un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http://www.fsc.go.kr/>).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안전행정부(<http://www.mopas.go.kr/>).

한국인터넷진흥원(<http://www.kisa.or.kr/>).

한국정보화진흥원(<http://www.nia.or.kr/>).

일본 금융청(<http://www.fsa.go.jp/>).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http://www.giroj.or.jp/>).

일본 손해보험협회(<http://www.sonpo.or.jp/>).

일본 생명보험협회(<http://www.seiho.or.jp/>).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http://www.iitf.nist.gov/>).

미국 뉴욕주 보험청(<http://state.ny.us/>).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http://www.naic.org/>).

미국 전미보험입법자협의회(NCOIL)(<http://www.ncoil.org/>).

미국 ISO(Insurance Service Office)(<http://www.iso.com/>).

미국 의료정보국(MIB)(<http://www.mib.com/>).

영국 보험사기방지관리소(CUE)(<http://www.insurancedatabases.co.uk/>).

영국 보험사기방지국(IFB)(<http://www.insurancefraudbureau.org/>).

영국 보험자협회(ABI)(<https://www.abi.org.uk/>).

영국 자동차보험기구(MIB)(<http://www.mib.org.uk/>).

프랑스 보험도난품수색·식별기구(<http://www.gieargos.org/>).

프랑스 보험사기방지국(ALFA)(<http://www.alfa.asso.fr/>).

##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 연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김대환, 김혜란 2010.1
-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이해은 2010.4
-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이경희 2010.5
-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익, 김동겸 2010.7

### ■ 정책보고서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중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황진태, 변혜원, 이경희,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김대환, 이경희, 이정환, 최원, 김세중,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안철경, 변혜원, 최영목, 최형선, 김경환, 이상우, 박정희,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류건식, 오영수, 조용운, 진익, 유진아,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황진태, 이정환, 최원, 김세중,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이기형,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변혜원,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유진아,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임준환, 김해식, 이경희, 조영현,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이정환,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익, 오병국,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김해식,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전용식, 최원, 김세중,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강민규,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역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김해식, 김석영 2014.3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강성호, 김유미 2014.4

##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정책연구실,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 관리연구 / 권용재, 장동식,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방안 / 김해식, 최영목, 김소연, 장동식,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변혜원,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김소연,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창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기승도,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 관리방안 / 조용운, 황진태,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김대환,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류건식,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전용식, 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① sure 4.0 / 진익, 김동겸,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김석영, 김세영, 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류건식,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황진태, 권용재,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조용운, 이소양  
2013.5

###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이상우,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익, 김상수, 김종훈, 변귀영,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 최형선, 최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계와 시사점 / 이창우,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서대교,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익, 김해식, 유진아,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이창우,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황진태,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최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익, 김해식,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변혜원, 이승준, 김경환,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전용식, 윤상호, 기승도, 이상우, 최원 2012. 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계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황진태, 변혜원, 정원석, 박선영, 이상우, 최원 2013. 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황진태,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변혜원,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방안 / 박선영,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강성호,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박선영, 권오경

- 2014.4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전성주, 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전용식, 윤성훈, 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조용운, 오승연, 김미화 2014.7

### ■ 연차보고서

---

- 제1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2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3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4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5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6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 ■ 영문발간물

---

- 제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 제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1 / KIRI, 2012.8  
 제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2 / KIRI, 2012.10  
 제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2 / KIRI, 2012.12  
 제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2 / KIRI, 2013.4  
 제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3 / KIRI, 2013.11  
 제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 ■ CEO Report

---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이상우, 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전용식, 전성주,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윤성훈

-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조재린,  
황진태, 송윤아 2014.7

#### ■ Insurance Business Report

---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간행물

### ■ 간행물

---

- 보험동향 / 계간
- 고령화리뷰 / 연 2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 도서회원 가입안내 』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정책/경영보고서</li> <li>- 조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정기간행물</li> <li>· 보험동향</li> <li>· 고령화 리뷰</li> <li>· 보험금융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li> <li>- 영문보고서</li> </ul>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9080 팩스 : (02)3775-9102

##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 저 자 약 력

### 김 경 환

승실대학교 경영학 박사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 khkim@kiri.or.kr)

### 강 민 규

한양대학교 법학사  
前 보험연구원 변호사  
법무법인 인의 변호사  
(E-mail : mkkang@lawfirm.co.kr)

### 이 해 랑

서울대학교 소비자학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원  
(E-mail : haerang@kiri.or.kr)

조사보고서 2014-8

###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발행일 2014년 8월

발행인 강 호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ISBN 979-11-85691-11-4

정가 10,000원